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2.20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60-1763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 여부
민영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2.20.(목)	25.03.04.(화)	25.03.05.(수)	25.03.06.(목)	25.03.12.(수)	25.03.14.(금)~ 25.03.21.(금)	25.03.24.(월)~ 25.03.27.(목)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 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 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www.elife.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차액을 감안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 가능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 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2024.12.1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2.20.(목)**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03.04.(화)	25.03.05.(수)	25.03.06.(목)	25.03.12.(수)	25.03.14.(금)~ 25.03.21.(금)	25.03.24.(월)~ 25.03.27.(목)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전시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 일원 ☎ 1660 - 1763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충청남도 천안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동주택과 - 6439호(2025.02.2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465-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9층 13개동 총 1,763세대 중 일반분양 1,4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519세대(기관추천 89세대, 다자녀가구 146세대, 신혼부부 163세대, 노부모부양 40세대, 생애최초 81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8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5000036	01	084.9752A	84A	84.9752	28.5592	113.5344	54.1124	167.6468	46.0343	293	29	29	52	8	26	144	149	11
		02	084.9748B	84B	84.9748	28.5813	113.5561	54.1120	167.6681	46.0341	236	23	23	42	7	21	116	120	9
		03	084.9933C	84C	84.9933	29.0037	113.9970	54.1238	168.1208	46.0441	195	19	19	35	5	17	95	100	6
		04	084.9893D	84D	84.9893	28.5897	113.5790	54.1213	167.7003	46.0419	189	18	18	34	5	17	92	97	7
		05	105.8363	105	105.8363	34.6344	140.4707	67.3967	207.8674	57.3355	155	-	15	-	4	-	19	136	5
		06	113.9352	113	113.9352	37.3719	151.3071	72.5541	223.8612	61.7230	160	-	16	-	4	-	20	140	5
		07	125.8896	125	125.8896	41.7095	167.5991	80.1668	247.7659	68.1992	263	-	26	-	7	-	33	230	8
		08	175.4124	175PH	175.4124	59.4049	234.8173	111.7030	346.5203	95.0308	2	-	-	-	-	-	-	2	-
		09	191.0991	191PH	191.0991	66.9934	258.0925	121.6924	379.7849	103.5256	5	-	-	-	-	-	-	5	-
합 계											1,498	89	146	163	40	81	519	979	51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내 표기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항·호별 구분 없이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 총1,763세대 중 일반분양 1,498세대를 제외한 세대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대상입니다.
- ※ 주택의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으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수에 할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주동 타입별로 공유하는 단위세대 주거공용 면적끼리 묶어,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재분배 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 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도시개발사업의 확정측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동주택의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별도의 시설입니다.
-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 시설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인허가 과정, 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일	
								계약시	2025.04.10.	2025.07.10.	2025.12.10.	2026.05.11.	2026.12.10.	2027.04.12.	2027.09.10.		
84A	102동 3호 103동 3,4호 108동 1,3,4,5호 109동 1,3,4호 111동 3호 113동 3,4호	2	11	196,677,251	301,122,749	-	497,800,000	10,000,000	39,780,000	49,780,000	49,780,000	49,780,000	49,780,000	49,780,000	49,780,000	49,780,000	149,340,000
		3	11	199,917,013	306,082,987	-	506,000,000	10,000,000	4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151,800,000
		4	7	205,527,333	314,672,667	-	520,200,000	10,000,000	4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52,020,000	156,060,000
		5~9	45	212,559,987	325,440,013	-	538,000,000	10,000,000	4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61,400,000
		10~19	86	222,832,402	341,167,598	-	564,000,000	10,000,000	4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169,200,000
		20층 이상	133	230,062,603	352,237,397	-	582,300,000	10,000,000	48,230,000	58,230,000	58,230,000	58,230,000	58,230,000	58,230,000	58,230,000	58,230,000	58,230,000
84B	102동 4호 103동 5호 104동 4호 105동 4호 106동 5호 109동 5호 111동 4호 112동 4호 113동 5호	2	9	192,133,683	294,166,317	-	486,300,000	10,000,000	38,630,000	48,630,000	48,630,000	48,630,000	48,630,000	48,630,000	48,630,000	48,630,000	145,890,000
		3	9	195,333,936	299,066,064	-	494,400,000	10,000,000	39,440,000	49,440,000	49,440,000	49,440,000	49,440,000	49,440,000	49,440,000	49,440,000	148,320,000
		4	9	200,825,727	307,474,273	-	508,300,000	10,000,000	4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152,490,000
		5~9	27	207,660,834	317,939,166	-	525,600,000	10,000,000	4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52,560,000	157,680,000
		10~19	64	217,696,194	333,303,806	-	551,000,000	10,000,000	4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165,300,000
		20층 이상	118	224,768,358	344,131,642	-	568,900,000	10,000,000	4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84C	106동 1,2호 107동 1,2호 108동 2호 109동 2호 113동 1,2호	2	6	194,899,333	298,400,667	-	493,300,000	10,000,000	3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147,990,000
		3	6	198,139,095	303,360,905	-	501,500,000	10,000,000	40,150,000	50,150,000	50,150,000	50,150,000	50,150,000	50,150,000	50,150,000	50,150,000	150,450,000
		4	3	203,670,396	311,829,604	-	515,500,000	10,000,000	41,550,000	51,550,000	51,550,000	51,550,000	51,550,000	51,550,000	51,550,000	51,550,000	154,650,000
		5~9	29	210,624,031	322,475,969	-	533,100,000	10,000,000	43,310,000	53,310,000	53,310,000	53,310,000	53,310,000	53,310,000	53,310,000	53,310,000	159,930,000
		10~19	53	220,817,428	338,082,572	-	558,900,000	10,000,000	45,890,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55,890,000	167,670,000
		20층 이상	98	227,968,610	349,031,390	-	577,000,000	10,000,000	4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84D	104동 3호 105동 3호 106동 3,4호 107동 3,4호 112동 3호	2	7	194,148,657	297,251,343	-	491,400,000	10,000,000	3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49,140,000	147,420,000
		3	7	197,388,419	302,211,581	-	499,600,000	10,000,000	39,960,000	49,960,000	49,960,000	49,960,000	49,960,000	49,960,000	49,960,000	49,960,000	149,880,000
		4	2	202,919,720	310,680,280	-	513,600,000	10,000,000	4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51,360,000	154,080,000
		5~9	26	209,833,845	321,266,155	-	531,100,000	10,000,000	4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159,330,000
		10~19	43	219,987,733	336,812,267	-	556,800,000	10,000,000	4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55,680,000	167,040,000
		20층 이상	104	227,138,915	347,761,085	-	574,900,000	10,000,000	47,490,000	57,490,000	57,490,000	57,490,000	57,490,000	57,490,000	57,490,000	57,490,000	57,490,000

105	101동 1호 102동 1호 103동 1호 110동 3호 111동 1호	2	5	277,629,248	425,064,320	42,506,432	745,200,000	10,000,000	64,520,000	74,520,000	74,520,000	74,520,000	74,520,000	74,520,000	74,520,000	223,560,000
		3	5	283,776,433	434,475,970	43,447,597	761,700,000	10,000,000	66,170,000	76,170,000	76,170,000	76,170,000	76,170,000	76,170,000	76,170,000	228,510,000
		4	5	289,960,874	443,944,660	44,394,466	778,300,000	10,000,000	67,830,000	77,830,000	77,830,000	77,830,000	77,830,000	77,830,000	77,830,000	233,490,000
		5~9	25	296,108,060	453,356,309	45,335,631	794,800,000	10,000,000	69,480,000	79,480,000	79,480,000	79,480,000	79,480,000	79,480,000	79,480,000	238,440,000
		10~19	50	302,292,501	462,824,999	46,282,500	811,400,000	10,000,000	71,140,000	81,140,000	81,140,000	81,140,000	81,140,000	81,140,000	81,140,000	243,420,000
		20층 이상	65	310,004,425	474,632,341	47,463,234	832,100,000	10,000,000	73,210,000	83,210,000	83,210,000	83,210,000	83,210,000	83,210,000	83,210,000	83,210,000
113	101동 3호 104동1호 105동1호 110동1호 112동1호	2	5	285,825,495	437,613,186	43,761,319	767,200,000	10,000,000	66,720,000	76,720,000	76,720,000	76,720,000	76,720,000	76,720,000	76,720,000	230,160,000
		3	5	292,196,215	447,367,078	44,736,707	784,300,000	10,000,000	68,430,000	78,430,000	78,430,000	78,430,000	78,430,000	78,430,000	78,430,000	235,290,000
		4	5	298,529,678	457,063,929	45,706,393	801,300,000	10,000,000	70,130,000	80,130,000	80,130,000	80,130,000	80,130,000	80,130,000	80,130,000	240,390,000
		5~9	25	304,900,398	466,817,820	46,681,782	818,400,000	10,000,000	71,840,000	81,840,000	81,840,000	81,840,000	81,840,000	81,840,000	81,840,000	245,520,000
		10~19	50	311,233,862	476,514,671	47,651,467	835,400,000	10,000,000	73,540,000	83,540,000	83,540,000	83,540,000	83,540,000	83,540,000	83,540,000	250,620,000
		20층 이상	70	319,169,319	488,664,255	48,866,426	856,700,000	10,000,000	75,670,000	85,670,000	85,670,000	85,670,000	85,670,000	85,670,000	85,670,000	85,670,000
125	101동 2호 102동2호 103동2호 104동2호 105동2호 110동2호 111동2호 112동2호	2	8	321,479,171	492,200,754	49,220,075	862,900,000	10,000,000	76,290,000	86,290,000	86,290,000	86,290,000	86,290,000	86,290,000	86,290,000	258,870,000
		3	8	328,632,259	503,152,492	50,315,249	882,100,000	10,000,000	78,210,000	88,210,000	88,210,000	88,210,000	88,210,000	88,210,000	88,210,000	264,630,000
		4	8	335,785,348	514,104,229	51,410,423	901,300,000	10,000,000	80,130,000	90,130,000	90,130,000	90,130,000	90,130,000	90,130,000	90,130,000	270,390,000
		5~9	40	342,901,181	524,998,927	52,499,892	920,400,000	10,000,000	82,040,000	92,040,000	92,040,000	92,040,000	92,040,000	92,040,000	92,040,000	276,120,000
		10~19	80	350,054,269	535,950,664	53,595,067	939,600,000	10,000,000	83,960,000	93,960,000	93,960,000	93,960,000	93,960,000	93,960,000	93,960,000	281,880,000
		20층 이상	119	358,995,630	549,640,337	54,964,033	963,600,000	10,000,000	86,360,000	96,360,000	96,360,000	96,360,000	96,360,000	96,360,000	96,360,000	96,360,000
175PH	104동 1호	20층 이상	1	863,698,182	1,322,365,289	132,236,529	2,318,300,000	10,000,000	221,830,000	231,830,000	231,830,000	231,830,000	231,830,000	231,830,000	231,830,000	695,490,000
	112동 1호	20층 이상	1	824,430,707	1,262,244,812	126,224,481	2,212,900,000	10,000,000	211,290,000	221,290,000	221,290,000	221,290,000	221,290,000	221,290,000	221,290,000	663,870,000
191PH	101동 1호 110동2호	20층 이상	2	861,425,586	1,318,885,831	131,888,583	2,312,200,000	10,000,000	221,220,000	231,220,000	231,220,000	231,220,000	231,220,000	231,220,000	231,220,000	693,660,000
	102동 1호 103동1호	20층 이상	2	949,311,710	1,453,443,900	145,344,390	2,548,100,000	10,000,000	244,810,000	254,810,000	254,810,000	254,810,000	254,810,000	254,810,000	254,810,000	764,430,000
	111동 1호	20층 이상	1	906,132,390	1,387,334,191	138,733,419	2,432,200,000	10,000,000	233,220,000	243,220,000	243,220,000	243,220,000	243,220,000	243,220,000	243,220,000	729,66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금액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동출입구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건축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지정된 계약금 계좌 외에 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계약 전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84C	84D	105	113	125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5	5	3	3	-	-	-	16	
	장기복무 제대군인	5	4	4	3	-	-	-	1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5	4	3	3	-	-	-	15	
	장애인	충청남도	5	3	3	3	-	-	-	14
		대전광역시	2	1	1	1	-	-	-	5
		세종특별자치시	2	1	1	1	-	-	-	5
	중소기업근로자	5	5	4	4	-	-	-	1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9	23	19	18	15	16	26	146		
신혼부부 특별공급	52	42	35	34	-	-	-	16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	7	5	5	4	4	7	40		
생애최초 특별공급	26	21	17	17	-	-	-	81		
합 계	144	116	95	92	19	20	33	51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p>공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57 313 2078 470">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무주택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p>청약자격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table border="1" data-bbox="257 956 2078 1144"> <thead> <tr> <th colspan="4">[청약예금의 예치금액]</th> </tr> <tr> <th>구 분</th> <th>천안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h>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th> <th>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천안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천안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특별공급 유의사항

- 2023.11.10.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일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세대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접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2018.05.04.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으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장합니다.

- 인터넷 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주택전시관)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선정하며 각 특별공급 주택형별로 낙첨자 중 추첨을 통해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신청자수가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2-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9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46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충청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p> <p>※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257 595 2083 1089">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border="1" data-bbox="257 1238 2083 1387"> <thead> <tr> <th>순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2.20.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 140%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60%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비고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data-bbox="264 539 2085 1193">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8">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8">17</td> <td>6개월 미만</td> <td>1</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5</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14</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6</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15</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7</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16</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8</td> <td>15년 이상</td> <td>17</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9</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본 주택은 60㎡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청약신청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257 867 2083 1362"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15%;">소득구분</th> <th colspan="2" style="width: 75%;">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5단계</td>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인 분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2.20.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증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비고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3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천안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h>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th> <th>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천안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구 분	천안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천안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 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비고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외국인 직계존속</p> <p>-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p>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p>-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분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p>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p> <p>2. 건축물대장등분: 처리일</p> <p>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p> <p>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p> <p>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p> <p>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p> <p>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p>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03.04(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주택전시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일원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주택전시관
일반공급	1순위	2025.03.05(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5.03.06(목)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또는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55-5일원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주택전시관 / 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청약신청 당일 17:30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청약신청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합니다.)**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은행창구 청약(은행창구 청약접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합니다.)**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란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3.12.(수) ~ 2025.03.21.(금) (1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기간(10일)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3.12.(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 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5.03.12.(수)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또는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03.24.(월) ~ 2025.03.27.(목) (10:00~17: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일원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주택전시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 이전에 아래 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당해 거주기간,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함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서류 미제출 사유로 자격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주택전시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 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을 하지 않을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및 계약하지 않을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비고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5.03.14.(금) ~ 2025.03.21.(금)	주택전시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일원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주택전시관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 및 동·호수 추첨, 계약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청약자에게 한하여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니다.)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합니다.
-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제출 서류**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 당첨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 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등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신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가점제 청약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주택전시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주택전시관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전시관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주택전시관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이 확인 될 경우 제출	
○	부동산 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제출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 토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 / 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재산세 납부내역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미등기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 가점표	본인	주택전시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본인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 참조 *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되었을 시 소득금액증명의 총 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 *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 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전시관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주택전사권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이 확인 될 경우 제출
	○	부동산 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제출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 토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 / 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재산세 납부내역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미등기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인감도장	본인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	위임장	본인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 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2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택공급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7.1.「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 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직인 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② 계속적인 근로자(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홈택스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⑤ 해당 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세무서, 해당 직장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전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주택전시관 비치 ② 세무서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 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 직장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국세원납증명)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③ 해당 직장, 세무서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소득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해야합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소득세 납부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해당 자격	자산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주민센터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천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3.24.(월) ~ 2025.03.27.(목) 10:00 ~ 17: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일원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주택전시관	특별/일반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공지에정

-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동 서류		○	자격검증서류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 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별도 납부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 방법 및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구매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위임장	본인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 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발급 기준이며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 확장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 인지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입니다.
-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 또는 전매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지정된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납부 계좌	예금주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하나은행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주)하나자산신탁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하나은행, 201-910037-54804, 예금주 : (주)하나자산신탁]로 관리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계약자) → '1010101홍길동' / 101동 1001호 홍길동(계약자) → '1011001홍길동')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순위 당첨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7일)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정 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발코니 확장, 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층·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중도금 납부 기일 및 납부금에 대한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지정납부일 이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잔금과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중도금이자를 납부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간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에서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시행위탁자,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시행위탁자,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 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시행위탁자,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용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 할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자,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에 상응하는 조건을 사업주체, 시행위탁자,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 시행위탁자, 시공사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시행위탁자,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시행위탁자,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 시행위탁자,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상담사는 분양 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시행위탁자,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는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 부터 변경된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 시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납부 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2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적용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또는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 불가 등) 또는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 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I)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084.9752A	084.9748B	084.9933C	084.9893D	105.8363	113.9352	125.8896	175.4124	191.0991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105	113	125	175PH	191PH
발코니 확장 비용	14,500,000	14,500,000	13,500,000	13,500,000	16,000,000	17,500,000	18,500,000	26,000,000	26,000,000

■ 추가선택품목(I)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5.07.10.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

■ 추가선택품목(I)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I) 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나은행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하나자산신탁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하나은행, 201-910037-54804, 예금주 : (주)하나자산신탁]로 관리됩니다.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II), 추가선택품목(III)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I)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I) 비용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지정일에 납부하며,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건축도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함으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발코니의 위치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배관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한 측면세대나 상층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해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및 단턱 형성,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실외기실)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 발코니 비 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인접 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새시 설치기준은 건축도면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가구(일반, 주방) 바닥, 배면, 천장에는 시공 선후 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목창호류, 가구류, 패널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 및 하자로 인한 책임이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 발코니 확장과 비확장시 기본 제공 품목(가구류 등)이 상이함으로써 계약 전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 마련된 POP 안내문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준공 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약식표기	선택안	구성	제조사	판매가격	비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84A	선택 1	거실+침실1	LG	3,500,000	택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선택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	6,500,000	
	84B	선택 1	거실+침실1	LG	3,500,000	택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선택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	6,500,000	
	84C	선택 1	거실+침실1	LG	3,500,000	택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선택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	6,500,000	
	84D	선택 1	거실+침실1	LG	3,500,000	택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선택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	6,500,000	
	105	선택 1	거실+주방+침실1	LG	5,250,000	택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선택 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LG	8,100,000	
		선택 3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LG	9,400,000	
	113	선택 1	거실+주방+침실1	LG	5,250,000	택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선택 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LG	9,400,000	
	125	선택 1	거실+주방+침실1	LG	5,250,000	택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선택 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LG	9,400,000	
	175PH	선택 1	거실1+거실2+침실1	LG	5,800,000	택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선택 2	거실1+거실2+침실1+침실2+침실3+침실4+침실5	LG	11,900,000	
	191PH	선택 1	거실1+거실2+침실1	LG	5,800,000	택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선택 2	거실1+거실2+침실1+침실2+침실3+침실4+침실5	LG	12,000,000	
		선택 3	거실1+거실2+침실1+침실2+침실3+침실4+침실5+가족실	LG	14,0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 LG 일반형 제품이며, 모델번호는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추가선택품목 판매 시 안내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이며, 위치이동, 추가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용 배관이 거실, 침실1에 기본으로 설치 예정이며,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용 배관과 콘센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욕실 배기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콘)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쪽의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수량에 따라 실외기 개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바람 토출구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외부 온도 대비 5도씨 이내로 설정하며 바람세기를 강풍으로 바람날개 방향을 좌우, 상하 반복하여 움직여서 가동해 주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계약시	2025.07.10.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

■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II) 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104-748915	디엘이앤씨(주)

-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추가선택품목(I) 공급대금, 추가선택품목(III) 공급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II) 품목의 계약은 ㈜하나자산신탁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시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II)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주택전시관 현금수납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 추가선택품목(II) 비용은 추가선택품목(II)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지정일에 납부하며,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I)

■ STYLE

※ STYLE 선택 시 STYLE별로 구성된 내용은 변경이 불가하고, 각 STYLE간 개별 품목의 교차 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약식표기	구성	판매가격	비고
STYLE	내추럴 클래식	84A	광폭강마루(Misty Flex)	10,700,000	구성 및 디자인 변경불가
			신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현관 팬트리 도어(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주방 상/하부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주방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조리대조명		
			와이드 아일랜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아일랜드 상판(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상판 매입형 콘센트		
			냉장고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84B	광폭강마루(Misty Flex)	11,950,000	구성 및 디자인 변경불가
			신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현관 팬트리 도어(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주방 상/하부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주방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조리대조명		
			양면수납형 식탁일체형 아일랜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아일랜드 상판(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상판 매입형 콘센트		
			냉장고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84C	광폭강마루(Misty Flex)	11,750,000	구성 및 디자인 변경불가
			신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현관 팬트리 도어(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주방 상/하부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주방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조리대조명		
			와이드 아일랜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아일랜드 상판(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상판 매입형 콘센트		
			냉장고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84D	광폭강마루 (Misty Flex)	10,750,000	구성 및 디자인 변경불가
			신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현관 팬트리 도어(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주방 상/하부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주방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조리대조명					
양면수납형 와이드 아일랜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아일랜드 상판(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상판 매입형 콘센트					
냉장고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105	광폭강마루(Misty Flex)	11,950,000	구성 및 디자인 변경불가		
	신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현관 팬트리 도어(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주방 상/하부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주방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조리대조명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아일랜드 상판(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상판 매입형 콘센트		
		홈카페형 냉장고장 : 유리도어 상부장(내부조명+작업조명) + 하부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113	광폭강마루(Misty Flex)	14,650,000	구성 및 디자인 변경불가
		신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현관 팬트리 도어(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주방 상/하부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주방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조리대조명		
		양면수납형 식탁일체형 아일랜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아일랜드 상판(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상판 매입형 콘센트		
		홈카페형 냉장고장 : 유리도어 상부장(내부조명+작업조명) + 하부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125	광폭강마루(Misty Flex)	14,850,000	구성 및 디자인 변경불가
		신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현관 팬트리 도어(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주방 상/하부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주방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조리대조명		
		양면수납형 식탁일체형 아일랜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아일랜드 상판(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상판 매입형 콘센트		
		홈카페형 냉장고장 : 유리도어 상부장(내부조명+작업조명) + 하부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175PH	광폭강마루(Misty Flex)	16,000,000	구성 및 디자인 변경불가
		신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현관 팬트리 도어(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주방 상/하부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주방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조리대조명		
		양면수납형 와이드 아일랜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아일랜드 상판(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상판 매입형 콘센트		
		홈카페형 냉장고장 : 유리도어 상부장(내부조명+작업조명) + 하부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191PH	광폭강마루(Misty Flex)	16,850,000	구성 및 디자인 변경불가
		신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현관 팬트리 도어(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주방 상/하부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주방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조리대조명				
양면수납형 와이드 아일랜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아일랜드 상판(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상판 매입형 콘센트				
홈카페형 냉장고장 : 유리도어 상부장(내부조명+작업조명) + 하부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				

■ 침실1, 침실5 업그레이드

※ 불박이 가구는 선택한 STYLE과 동일한 STYLE 범위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약식표기	구성 및 모델	판매가격	비고	
침실1	미니멀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 화장대	84A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 오픈수납장	7,500,000	택1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의류관리기장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 오픈수납장	7,500,000	
			84B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 오픈수납장	6,800,000	택1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의류관리기장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 오픈수납장	6,800,000	
			84C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4,200,000	택1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의류관리기장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4,200,000	
			84D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3,800,000	택1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의류관리기장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3,800,000	
			105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 오픈수납장	6,900,000	택1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의류관리기장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 오픈수납장	6,900,000	
			113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 오픈수납장	8,900,000	택1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의류관리기장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 오픈수납장	8,900,000	
	125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 오픈수납장	8,900,000			
	175PH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4,100,000			
	191PH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4,100,000			
	미니멀	침실1 드레스룸 데스크형 불박이장 & 화장대	84A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데스크형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 책장	7,700,000	침실1 드레스룸 데스크형 불박이장은 선택한 STYLE에 상관없이 미니멀 스타일로 제공
			84B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데스크형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 책장	6,300,000	
			105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데스크형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 책장	7,000,000	
113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데스크형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 책장	8,700,000		
125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데스크형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 책장	8,400,000		
미니멀	침실1 불박이장 & 화장대	84A	침실1 불박이장	2,400,000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선택 시 구매가능	
		84B	침실1 불박이장	2,400,000		
		84C	침실1 불박이장	2,400,000		
		84D	침실1 불박이장	2,400,000		

			105	침실1 불박이장	2,800,000	침실1 드레스룸 옵션 미선택 시 구매가능
			113	침실1 불박이장	3,000,000	
			125	침실1 불박이장	3,000,000	
			175PH	침실1 불박이장	3,500,000	
			191PH	침실1 불박이장	3,500,000	
			84A	침실1 불박이장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3,400,000	
			84B	침실1 불박이장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3,400,000	
			84C	침실1 불박이장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3,400,000	
			84D	침실1 불박이장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3,400,000	
			105	침실1 불박이장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3,750,000	
			113	침실1 불박이장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4,300,000	
			125	침실1 불박이장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4,300,000	
			175PH	침실1 불박이장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4,600,000	
			191PH	침실1 불박이장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4,600,000	
	내추럴 클래식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 화장대	84A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디자인패널 + 오픈수납장	9,800,000	택1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의류관리기장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디자인패널 + 오픈수납장	9,800,000	
			84B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디자인패널 + 오픈수납장	8,700,000	택1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의류관리기장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디자인패널 + 오픈수납장	8,700,000	
			84C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디자인패널	5,500,000	택1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의류관리기장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디자인패널	5,500,000	
			84D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디자인패널	5,000,000	택1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의류관리기장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디자인패널	5,000,000	
			105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디자인패널 + 오픈수납장	9,100,000	택1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의류관리기장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디자인패널 + 오픈수납장	9,100,000	
			113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디자인패널 + 오픈수납장	12,000,000	택1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의류관리기장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디자인패널 + 오픈수납장	12,000,000					
125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디자인패널 + 오픈수납장	12,000,000				
175PH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디자인패널	5,500,000				
191PH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디자인패널	5,500,000				

내추럴 클래식	침실1 불박이장 & 화장대	84A	침실1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3,100,000	침실1 드레스룸 불박이장 선택 시 구매가능			
		84B	침실1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3,100,000				
		84C	침실1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3,100,000				
		84D	침실1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3,100,000				
		105	침실1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3,600,000				
		113	침실1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3,900,000				
		125	침실1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3,900,000				
		175PH	침실1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4,500,000				
		191PH	침실1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4,500,000				
		84A	침실1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4,700,000				
		84B	침실1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4,700,000				
		84C	침실1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4,700,000				
		84D	침실1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4,700,000				
		105	침실1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5,200,000				
		113	침실1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5,900,000				
		125	침실1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5,900,000				
		175PH	침실1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6,400,000				
		191PH	침실1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6,400,000				
		침실5	미니멀	침실5 드레스룸 불박이장 & 화장대		175PH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5 드레스룸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3,700,000
					191PH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5 드레스룸 불박이장 + 디자인패널	3,700,000	
침실5 불박이장 & 화장대	191PH			침실5 불박이장	3,000,000	침실5 드레스룸 불박이장 선택 시 구매가능		
	191PH			침실5 불박이장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4,400,000	침실1 드레스룸 옵션 미선택 시 구매가능		
내추럴 클래식	침실5 드레스룸 불박이장 & 화장대		175PH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5 드레스룸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디자인패널	5,500,000			
			191PH	측면수납형 화장대, 조명형 타원 거울, 상판(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침실5 드레스룸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디자인패널	5,100,000			
	침실5 불박이장 & 화장대		191PH	침실5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4,000,000	침실5 드레스룸 불박이장 선택 시 구매가능		
			191PH	침실5 불박이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 화장대 마감재 업그레이드	6,000,000	침실1 드레스룸 옵션 미선택 시 구매가능		

■ 침실2, 침실3, 침실4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약식표기	구성 및 모델	판매가격	비고
침실2	84A	침실2 불박이장	1,500,000	택1
	84B	침실2 불박이장	1,750,000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4,800,000	
		침실2 와이드 불박이장	2,700,000	
	84C	침실2 불박이장	1,500,000	택1
	84D	침실2 불박이장	1,500,000	
	105	침실2 불박이장	2,100,000	택1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4,800,000	
		침실2 와이드 불박이장	2,700,000	
	113	침실2 불박이장	1,750,000	택1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4,800,000	
		침실2 와이드 불박이장	2,700,000	
	125	침실2 불박이장	1,750,000	택1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4,800,000	
		침실2 와이드 불박이장	2,700,000	
	175PH	침실2 불박이장	1,750,000	택1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4,800,000	
		침실2 와이드 불박이장	2,700,000	
	191PH	침실2 불박이장	1,750,000	택1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4,800,000	
		침실2 와이드 불박이장	2,700,000	
침실3	84A	침실3 불박이장	1,750,000	택1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4,800,000	
		침실3 와이드 불박이장	2,700,000	
	84B	침실3 불박이장	1,750,000	택1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4,600,000	
		침실3 와이드 불박이장	2,700,000	

	84C	침실3 불박이장	1,750,000	택1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4,800,000	
		침실3 와이드 불박이장	2,700,000	
	84D	침실3 불박이장	1,750,000	택1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4,800,000	
		침실3 와이드 불박이장	2,700,000	
	105	침실3 불박이장	2,050,000	택1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4,800,000	
		침실3 와이드 불박이장	2,700,000	
	113	침실3 불박이장	1,500,000	
	125	침실3 불박이장	1,500,000	
	175PH	침실3 불박이장	2,250,000	택1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4,800,000	
		침실3 와이드 불박이장	2,700,000	
	191PH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4,800,000	택1
침실3 와이드 불박이장		2,700,000		
침실4	113	침실4 불박이장	1,750,000	택1
		침실4 데스크형 불박이장	4,800,000	
		침실4 와이드 불박이장	2,700,000	
	125	침실4 불박이장	1,750,000	택1
		침실4 데스크형 불박이장	4,800,000	
		침실4 와이드 불박이장	2,700,000	
		침실4 데스크형 불박이장(※복도통합형 무상옵션 선택 시 가능)	5,700,000	
		침실4 와이드 불박이장(※복도통합형 무상옵션 선택 시 가능)	3,600,000	
	175PH	침실4 데스크형 불박이장	4,800,000	택1
		침실4 와이드 불박이장	2,700,000	

■ 주방 업그레이드

※ 주방 업그레이드는 선택한 STYLE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약식표기	구성	판매가격	비고
주방	미니멀	벽면 마감재 업그레이드 & 상부장 조리대조명	84A	주방 벽(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 조리대조명	1,150,000	
			84B	주방 벽(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 조리대조명	1,050,000	
			84C	주방 벽(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 조리대조명	1,150,000	
			84D	주방 벽(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 조리대조명	1,000,000	
			105	주방 벽(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 조리대조명	1,200,000	
			113	주방 벽(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 조리대조명	1,500,000	
			125	주방 벽(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 조리대조명	1,400,000	
			175PH	주방 벽(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 조리대조명	1,300,000	
			191PH	주방 벽(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 조리대조명	1,300,000	
	미니멀	아일랜드장 업그레이드	84A	와이드 아일랜드장 + 아일랜드 상판(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 상판 매입형 콘센트	800,000	
			84B	양면수납형 식탁일체형 아일랜드장 + 아일랜드 상판(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 상판 매입형 콘센트	1,400,000	
			84C	와이드 아일랜드장 + 아일랜드 상판(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 상판 매입형 콘센트	750,000	
			84D	양면수납형 와이드 아일랜드장 + 아일랜드 상판(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 상판 매입형 콘센트	1,000,000	
			105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 + 아일랜드 상판(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 상판 매입형 콘센트	850,000	
			113	양면수납형 식탁일체형 아일랜드장 + 아일랜드 상판(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 상판 매입형 콘센트	1,850,000	
			125	양면수납형 식탁일체형 아일랜드장 + 아일랜드 상판(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 상판 매입형 콘센트	2,000,000	
			175PH	양면수납형 와이드 아일랜드장 + 아일랜드 상판(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 상판 매입형 콘센트	2,800,000	
			191PH	양면수납형 와이드 아일랜드장 + 아일랜드 상판(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 상판 매입형 콘센트	2,800,000	
	미니멀	냉장고장 업그레이드	105	홈카페형 냉장고장 : 유리도어 상부장(내부조명+작업조명) + 하부장 +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1,000,000	
			113	홈카페형 냉장고장 : 유리도어 상부장(내부조명+작업조명) + 하부장 +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700,000	
			125	홈카페형 냉장고장 : 유리도어 상부장(내부조명+작업조명) + 하부장 +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600,000	
			175PH	홈카페형 냉장고장 : 유리도어 상부장(내부조명+작업조명) + 하부장 +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850,000	
			191PH	홈카페형 냉장고장 : 유리도어 상부장(내부조명+작업조명) + 하부장 + 상판/벽(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	850,000	
	미니멀	윈도우 홈바	84D	윈도우 홈바 : 상판(엔지니어드스톤-실버쉐이드)/벽(디자인패널-사하라라이트), 하부장	1,800,000	
	내추럴 클래식	윈도우 홈바		윈도우 홈바 : 상판(엔지니어드스톤-골든쇼어)/벽(디자인패널-사하라라이트), 하부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2,600,000	
	미니멀	주방 히든서랍들장	113	주방 히든서랍들장	3,200,000	
	내추럴 클래식	주방 히든서랍들장		주방 히든서랍들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4,100,000	

■ 욕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약식표기	구성	판매가격	비고
욕실	복합환풍기	84A	복합환풍기 (욕실1 + 욕실2)	1,200,000	
		84B	복합환풍기 (욕실1 + 욕실2)	1,200,000	
		84C	복합환풍기 (욕실1 + 욕실2)	1,200,000	
		84D	복합환풍기 (욕실1 + 욕실2)	1,200,000	
		105	복합환풍기 (욕실1 + 욕실2)	1,200,000	
		113	복합환풍기 (욕실1 + 욕실2)	1,200,000	
		125	복합환풍기 (욕실1 + 욕실2)	1,200,000	
		175PH	복합환풍기 (욕실1 + 욕실2 + 욕실3)	1,800,000	
		191PH	복합환풍기 (욕실1 + 욕실2 + 욕실3)	1,800,000	
	비데일체형 양변기	84A	비데일체형양변기 (욕실1 + 욕실2)	750,000	
		84B	비데일체형양변기 (욕실1 + 욕실2)	750,000	
		84C	비데일체형양변기 (욕실1 + 욕실2)	750,000	
		84D	비데일체형양변기 (욕실1 + 욕실2)	750,000	
		105	비데일체형양변기 (욕실1 + 욕실2)	750,000	
		113	비데일체형양변기 (욕실1 + 욕실2)	750,000	
		125	비데일체형양변기 (욕실1 + 욕실2)	750,000	
		175PH	비데일체형양변기 (욕실1 + 욕실2 + 욕실3)	1,120,000	
		191PH	비데일체형양변기 (욕실1 + 욕실2 + 욕실3)	1,120,000	

■ 현관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약식표기	구성 및 모델	판매가격	비고
현관	미니멀	오픈형 신발장	84A	오픈형 신발장(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간접조명 + 신발 살균기 + 에어 브러쉬	1,650,000	
			84B	오픈형 신발장(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간접조명 + 신발 살균기 + 에어 브러쉬	1,650,000	
			84C	오픈형 신발장(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간접조명 + 신발 살균기 + 에어 브러쉬	1,650,000	
			84D	오픈형 신발장(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간접조명 + 신발 살균기 + 에어 브러쉬	1,650,000	
			105	오픈형 신발장(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간접조명 + 신발 살균기 + 에어 브러쉬	1,650,000	
			113	오픈형 신발장(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간접조명 + 신발 살균기 + 에어 브러쉬	1,650,000	
			125	오픈형 신발장(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간접조명 + 신발 살균기 + 에어 브러쉬	1,650,000	
			175PH	오픈형 신발장(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간접조명 + 신발 살균기 + 에어 브러쉬	1,650,000	
			191PH	오픈형 신발장(엔지니어드스톤-마터호른) + 간접조명 + 신발 살균기 + 에어 브러쉬	1,650,000	

	내추럴 클래식	오픈형 신발장	84A	오픈형 신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엔지니어드스톤-마티호른) + 간접조명 + 신발 살균기 + 에어 브러쉬	2,300,000	
			84B	오픈형 신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엔지니어드스톤-마티호른) + 간접조명 + 신발 살균기 + 에어 브러쉬	2,300,000	
			84C	오픈형 신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엔지니어드스톤-마티호른) + 간접조명 + 신발 살균기 + 에어 브러쉬	2,300,000	
			84D	오픈형 신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엔지니어드스톤-마티호른) + 간접조명 + 신발 살균기 + 에어 브러쉬	2,300,000	
			105	오픈형 신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엔지니어드스톤-마티호른) + 간접조명 + 신발 살균기 + 에어 브러쉬	2,300,000	
			113	오픈형 신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엔지니어드스톤-마티호른) + 간접조명 + 신발 살균기 + 에어 브러쉬	2,300,000	
			125	오픈형 신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엔지니어드스톤-마티호른) + 간접조명 + 신발 살균기 + 에어 브러쉬	2,300,000	
			175PH	오픈형 신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엔지니어드스톤-마티호른) + 간접조명 + 신발 살균기 + 에어 브러쉬	2,300,000	
			191PH	오픈형 신발장(내추럴 클래식 디자인, 엔지니어드스톤-마티호른) + 간접조명 + 신발 살균기 + 에어 브러쉬	2,300,000	
	현관중문	84A	현관중문(1도어 슬라이딩)	1,650,000		
		84B	현관중문(1도어 슬라이딩)	1,650,000		
		84C	현관중문(1도어 슬라이딩)	1,650,000		
		84D	현관중문(1도어 슬라이딩)	1,650,000		
		105	현관중문(1도어 슬라이딩)	1,800,000		
		113	현관중문(1도어 슬라이딩)	1,800,000		
		125	현관중문(1도어 슬라이딩)	1,800,000		
		175PH	현관중문(1도어 슬라이딩)	1,800,000		
		191PH	현관중문(1도어 슬라이딩)	1,800,000		

■ 거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약식표기	구성 및 모델	판매가격	비고
거실	디자인패널	84A	디자인패널 확장(거실창호면 + 아트월 맞은편 + 침실면 복도)	2,100,000	
		84B	디자인패널 확장(거실창호면 + 아트월 맞은편 + 침실면 복도)	3,400,000	
		84C	디자인패널 확장(거실창호면 + 아트월 맞은편 + 침실면 복도)	2,200,000	
		84D	디자인패널 확장(거실창호면 + 아트월 맞은편 + 침실면 복도)	2,100,000	
		105	디자인패널 확장(거실창호면 + 아트월 맞은편 + 침실면 복도)	2,550,000	
		113	디자인패널 확장(거실창호면 + 아트월 맞은편 + 침실면 복도)	3,900,000	
		125	디자인패널 확장(거실창호면 + 아트월 맞은편 + 침실면 복도)	4,800,000	
		175PH	디자인패널 확장(거실창호면 + 아트월 맞은편 + 침실면 복도)	5,200,000	
		191PH	디자인패널 확장(거실창호면 + 아트월 맞은편 + 침실면 복도 및 가족실)	6,800,000	

인피니티도어	84A	인피니티도어(침실1)	1,350,000	디자인 패널 선택시 구매가능 택1
		인피니티도어(침실1, 침실2, 침실3, 욕실2)	5,400,000	
	84B	인피니티도어(침실1)	1,350,000	디자인 패널 선택시 구매가능 택1
		인피니티도어(침실1, 침실2, 침실3, 욕실2)	5,400,000	
	84C	인피니티도어(침실1)	1,350,000	디자인 패널 선택시 구매가능 택1
		인피니티도어(침실1, 침실2, 침실3, 욕실2)	5,400,000	
	84D	인피니티도어(침실1)	1,350,000	디자인 패널 선택시 구매가능 택1
		인피니티도어(침실1, 침실2, 침실3, 욕실2)	5,400,000	
	105	인피니티도어(침실1)	1,350,000	디자인 패널 선택시 구매가능 택1
		인피니티도어(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공간, 욕실2)	6,750,000	
	113	인피니티도어(침실1)	1,350,000	디자인 패널 선택시 구매가능 택1
		인피니티도어(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욕실2)	6,750,000	
	125	인피니티도어(침실1)	1,350,000	디자인 패널 선택시 구매가능 택1
		인피니티도어(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욕실2)	6,750,000	
	175PH	인피니티도어(침실1)	1,350,000	디자인 패널 선택시 구매가능 택1
		인피니티도어(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침실5, 욕실2)	8,100,000	
	191PH	인피니티도어(침실1)	1,350,000	디자인 패널 선택시 구매가능 택1
		인피니티도어(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침실5, 욕실2)	8,100,000	

■ 다용도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약식표기	구성	판매가격	비고
다용도실	손빨래 하부장	84A	손빨래 싱크볼 + 수전 + 하부장 + 상판(MMA-콜리나차이)	2,100,000	
		84B	손빨래 싱크볼 + 수전 + 하부장 + 상판(MMA-콜리나차이)	1,650,000	
		84C	손빨래 싱크볼 + 수전 + 하부장 + 상판(MMA-콜리나차이)	1,650,000	
		84D	손빨래 싱크볼 + 수전 + 하부장 + 상판(MMA-콜리나차이)	2,100,000	
		105	손빨래 싱크볼 + 수전 + 하부장 + 상판(MMA-콜리나차이)	2,100,000	
		113	손빨래 싱크볼 + 수전 + 하부장 + 상판(MMA-콜리나차이)	1,650,000	
		125	손빨래 싱크볼 + 수전 + 하부장 + 상판(MMA-콜리나차이)	1,650,000	
		175PH	손빨래 싱크볼 + 수전 + 하부장 + 상판(MMA-콜리나차이)	2,650,000	
		191PH	손빨래 싱크볼 + 수전 + 하부장 + 상판(MMA-콜리나차이)	2,650,000	
	다용도실 불박이장	125	다용도실 수납강화 : 수납장 + 디자인패널 + 의류관리기장		2,200,000
다용도실 수납강화 : 수납장 + 디자인패널			2,200,000		
175PH		다용도실 수납강화 : 양면형 수납장 + 의류관리기장		3,500,000	택1
		다용도실 수납강화 : 양면형 수납장		3,500,000	
191PH		다용도실 수납강화 : 양면형 수납장 + 의류관리기장		3,500,000	택1
		다용도실 수납강화 : 양면형 수납장		3,500,000	

품목		약식표기	구성	판매가격	비고
공통	광폭강마루	84A	광폭강마루 (Misty Flex)	2,100,000	
		84B	광폭강마루 (Misty Flex)	2,000,000	
		84C	광폭강마루 (Misty Flex)	2,000,000	
		84D	광폭강마루 (Misty Flex)	2,100,000	
		105	광폭강마루 (Misty Flex)	2,650,000	
		113	광폭강마루 (Misty Flex)	2,800,000	
		125	광폭강마루 (Misty Flex)	3,000,000	
		175PH	광폭강마루 (Misty Flex)	4,100,000	
		191PH	광폭강마루 (Misty Flex)	4,700,000	
	탄성코트	84A	탄성코트	1,100,000	
		84B	탄성코트	1,150,000	
		84C	탄성코트	1,250,000	
		84D	탄성코트	1,150,000	
		105	탄성코트	1,250,000	
		113	탄성코트	1,100,000	
		125	탄성코트	1,450,000	
		175PH	탄성코트	2,250,000	
		191PH	탄성코트	2,250,000	
	조명 특화 패키지	84A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거실 디밍 제어 시스템(12단계 밝기 조정),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 복도 풋램프 / 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 침실 디밍 제어 시스템 (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정) + 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욕실1 + 욕실2) +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 (욕실1 + 욕실2)	4,250,000	
		84B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거실 디밍 제어 시스템(12단계 밝기 조정),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 복도 풋램프 / 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 침실 디밍 제어 시스템 (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정) + 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욕실1 + 욕실2) +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 (욕실1 + 욕실2)	4,250,000	
		84C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거실 디밍 제어 시스템(12단계 밝기 조정),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 복도 풋램프 / 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 침실 디밍 제어 시스템 (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정) + 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욕실1 + 욕실2) +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 (욕실1 + 욕실2)	4,250,000	
		84D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거실 디밍 제어 시스템(12단계 밝기 조정),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 복도 풋램프 / 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 침실 디밍 제어 시스템 (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정) + 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욕실1 + 욕실2) +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 (욕실1 + 욕실2)	4,250,000	

		105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거실 디밍 제어 시스템(12단계 밝기 조정),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 복도 풋램프 / 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 침실 디밍 제어 시스템 (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정) + 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욕실1 + 욕실2) +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 (욕실1 + 욕실2)	4,450,000	
		113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거실 디밍 제어 시스템(12단계 밝기 조정),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 복도 풋램프 / 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 침실 디밍 제어 시스템 (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정) + 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욕실1 + 욕실2) +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 (욕실1 + 욕실2)	5,200,000	
		125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거실 디밍 제어 시스템(12단계 밝기 조정),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 복도 풋램프 / 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 침실 디밍 제어 시스템 (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정) + 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욕실2) +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 (욕실1 + 욕실2)	5,100,000	
		175PH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거실 디밍 제어 시스템(12단계 밝기 조정),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 복도 풋램프 / 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 침실 디밍 제어 시스템 (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정) + 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욕실2) +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 (욕실1 + 욕실2 + 욕실3)	6,200,000	
		191PH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거실 디밍 제어 시스템(12단계 밝기 조정),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 복도 풋램프 / 거실, 가족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 침실 디밍 제어 시스템 (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정) + 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욕실2) +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 (욕실1 + 욕실2 + 욕실3)	6,600,000	

■ 주방 업그레이드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약식표기	선택	구성		판매가격	비고	
주방	빌트인 인덕션	전타입	나비엔 매직	보더리스 인덕션	ERI-7704	1,950,000	택1	
			LG	인덕션 3구	BEI3GQBI	1,100,000		
			삼성	인덕션 3구	NZ63B5056AK	1,07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전타입	LG	DIOS 식기세척기 (14인용)	DIE6PT	1,650,000	택1	
			삼성	삼성 식기세척기 (12인용)	DW60T7065SS	950,000		
	빌트인 전기오븐	전타입	나비엔 매직	컨백션 스팀 오븐	EOB-5004	650,000	택1	
			LG	LG 광파오븐	MZ385EBTA	480,000		
			삼성	삼성 비스포크 전기오븐(50리터)	NQ50T8539BK	900,000		
	의류관리기	전타입	LG	의류관리기 (※ 드레스룸(84A, 84B, 84C, 84D, 105, 113) 및 다용도실(125, 175, 191) 불박이장(의류관리기설치형) 선택 시에만 가능)	SC5MBR53	1,800,000		
	빌트인 냉장고	미니멀	84A	тол장형 냉장고장 선택 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6,650,000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BC4S1AA1(G) BC3K1AA1(G)	7,500,000	
84B	тол장형 냉장고장 선택 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6,65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BC4S1AA1(G) BC3K1AA1(G)	7,500,000		
84C	тол장형 냉장고장 선택 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7,80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BC4S1AA1(G) BC3K1AA1(G)	8,650,000		
84D	тол장형 냉장고장 선택 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7,00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BC4S1AA1(G) BC3K1AA1(G)	7,850,000		
105	тол장형 냉장고장 선택 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9,80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BC4S1AA1(G) BC3K1AA1(G)	10,650,000		
	홀카페형 냉장고장 선택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7,60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BC4S1AA1(G) BC3K1AA1(G)	8,450,000		
113	тол장형 냉장고장 선택 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7,70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BC4S1AA1(G) BC3K1AA1(G)	8,550,000		
	홀카페형 냉장고장 선택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7,65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BC4S1AA1(G) BC3K1AA1(G)	8,500,000		
125	тол장형 냉장고장 선택 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7,70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BC4S1AA1(G) BC3K1AA1(G)	8,550,000		
	홀카페형 냉장고장 선택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7,65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BC4S1AA1(G) BC3K1AA1(G)	8,500,000	
		175PH	틀장형 냉장고장 선택 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8,80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BC4S1AA1(G) BC3K1AA1(G)	9,650,000	
			홈카페형 냉장고장 선택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7,95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BC4S1AA1(G) BC3K1AA1(G)	8,800,000	
		191PH	틀장형 냉장고장 선택 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8,80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BC4S1AA1(G) BC3K1AA1(G)	9,650,000	
			홈카페형 냉장고장 선택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7,95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BC4S1AA1(G) BC3K1AA1(G)	8,800,000	
	내추럴 클래식	84A	틀장형 냉장고장 선택 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6,70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BC4S1AA1(G) BC3K1AA1(G)	
		84B	틀장형 냉장고장 선택 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6,70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BC4S1AA1(G) BC3K1AA1(G)	
		84C	틀장형 냉장고장 선택 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7,85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BC4S1AA1(G) BC3K1AA1(G)	
		84D	틀장형 냉장고장 선택 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7,05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인출식수납장	BC4S1AA1(G) BC3K1AA1(G)	
		105	홈카페형 냉장고장 선택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7,65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BC4S1AA1(G) BC3K1AA1(G)	8,500,000	
		113	홀카페형 냉장고장 선택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7,70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BC4S1AA1(G) BC3K1AA1(G)	8,550,000	
		125	홀카페형 냉장고장 선택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7,70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BC4S1AA1(G) BC3K1AA1(G)	8,550,000	
		175PH	홀카페형 냉장고장 선택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8,00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BC4S1AA1(G) BC3K1AA1(G)	8,850,000	
		191PH	홀카페형 냉장고장 선택시	삼성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 + 변온냉장 + 김치냉장고	RR40C7(9/8)95AP(satin) RZ24C5(9/8)G0AP(satin) RQ34C7(9/8)45AP(satin)	8,000,000	택1 구성 및 디자인 변경 불가
				LG	LG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김치냉장고	BC4S1AA1(G) BC3K1AA1(G)	8,850,000	

■ 추가선택품목(Ⅲ)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계약시	별도지정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

■ 추가선택품목(Ⅲ)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Ⅲ) 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304-754370	디엘이앤씨(주)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추가선택품목(Ⅰ)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Ⅱ) 공급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Ⅲ) 품목의 계약은 (주)하나자산신탁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시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Ⅲ)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주택전시관 현금수납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Ⅲ) 비용은 추가선택품목(Ⅲ)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지정일에 납부하며,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사업주체 또는 판매주체에서 제휴 신용카드사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결제 서비스 준비 중으로 서비스 제공이 취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결제는 추가선택품목(III) 납부시에만 가능하며,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제휴 신용카드사 및 제반되는 결제조건, 수수료등에 대한 설명은 추후 안내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 디엘이앤씨(주)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됩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고 체결하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단종(성능개선, 디자인 변경 등의 사유)시 동 제조사의 동급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조사의 제품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수준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고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으며, 입주 전에 안내형식으로 고지합니다.
-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상품구성, 제품모델, 디자인(색상포함), 설치위치,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스타일 옵션은 해당 스타일 구현을 위해 구성품목의 디자인(색상포함), 재질, 구성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스타일 옵션 선택에 따라 개별 선택할 수 있는 품목중 스타일과 연계된 상품은 동일한 스타일 범위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품목 (가전,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디자인(색상포함),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은 공정상(발주 및 설치)의 사유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공급계약이 불가합니다.
- ※ 삼성 비스포크, LG 오브제 선택시 공고한 바와 같이 세트 구성된 상품으로 판매하며, 상품의 조합, 디자인(색상포함), 설치위치, 결합가구의 구성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고 공고내용 외 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
- ※ 삼성 비스포크, LG 오브제 설치시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구성품목의 설치위치가 좌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기오븐 미선택 시 해당부위는 오픈 수납장으로 마감됩니다.
- ※ 스타일러(의류관리기)는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선택시 지정된 위치에 가구(의류관리기장)과 결합하여 설치되고, 설치위치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침실1 드레스룸에 설치(84A,B,C,D, 105, 113타입), 다용도실에 설치(125, 175, 191타입))
- ※ 추가선택품목 중 가전과 붙박이가구 설치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 붙박이가구 옵션의 가구 수납형태 및 내부 구성과 규격은 주택형별,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구성,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주택형별 침실1 및 드레스룸 내 창호 커텐박스는 붙박이장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와의 간섭으로 인해 커텐박스 크기,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침실1, 5 와이드 붙박이장 및 기타 침실의 데스크형 붙박이장 혹은 와이드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가려지는 벽체에 설치되는 콘센트 및 통신 포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엔지니어드스톤(주방상판,주방벽, 아일랜드 상판) 설치 시 분절 시공될 수 있으며, 이음매가 보일 수 있습니다.
- ※ 인피니티 도어 상부 디테일이나 몰딩 마감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욕실 복합 환풍기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욕실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욕실 복합 환풍기의 리모컨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본 공사 시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욕실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인덕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하이브리드쿡탑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정산하였습니다.
- ※ 인덕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거실 및 침실의 디밍 제어시스템은 입주 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 ※ 조명특화 선택 시 거실, 주방, 복도의 다운라이트가 소형화되고 거실 직부등이 없으므로 기본형보다 평균 조도가 낮아져 어둡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 조명특화 선택 시 거실 조명제어 장치(릴레이)가 천장 내부에 설치되며,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현관 팬트리 등에 설치됩니다.
- ※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한 가구 또는 평면 변경에 따라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천장기구(조명 포함)의 규격,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일랜드장 가구에 연결된 전선관 또는 케이블에 의해 위치 이동에 제약이 있으며, 인접한 벽이 없는 독립형의 경우 바닥에서 전선관이 노출되므로 감안하여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품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고, 전품목 전시 불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상세한 설명과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선택 이후 제품 특성상 시장 판매가가 감액 될 수 있으며, 당 사는 이에 대한 차액이나, 감액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주택전시관 및 홍보물상의 이미지와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문에 미기재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II,III) 계약시 안내 후 계약합니다.

10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전에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2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가스/수도/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전 인테리어 공사는 잔금 완납 후 가능하며 이 경우 인테리어 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대금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 (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 등으로 인한 문제 (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 는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시니어라운지(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4개소), 유아놀이터, 드포엠 카페(주민카페), 실외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센터(스포츠 코트, 스크린골프룸, 실내골프연습장, 미니짐, 필라테스룸, G·X룸, 피트니스, 런드리라운지, 사우나, 라운지카페, 다함께돌봄센터, 패밀리시네마, 멀티룸, 스터디라운지, 프라이빗스터디룸, 프라이빗오피스룸, 레슨룸), 스카이크뮤니티(스카이크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키즈스테이션(2개소), 경비실(2개소), 근린생활시설1,2,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 ※ 어린이 놀이터 및 실외 주민운동시설은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은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 천안 업성구역 공동주택 2. 신청자 : (주)솔이랑코퍼레이션 3. 대지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465-6번지 일원 4. 성능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열방출계수 차단성능</td><td>★★</td></tr> <tr><td>2. 중앙공기류 차단성능</td><td>★</td></tr> <tr><td>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td><td>★★★★</td></tr> <tr><td>4. 공동소음도로 인접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화강질 광배수 소음</td><td>★★★★</td></tr> </table> 나. 구조 관련 등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가변성</td><td>★</td></tr> <tr><td>3. 수리용이성 (외부부분)</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 (내부부분)</td><td>★</td></tr> </table> 다. 환경 관련 등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기존태서의 경제적인 가치</td><td>-</td></tr> <tr><td>2. 과도한 지열개발 지양</td><td>-</td></tr> <tr><td>3. 도로나 강도·상도(하천/방파제·홍수거름반영) 최소화</td><td>-</td></tr> <tr><td>4. 인공열·냉방에 따른 열섬·화상성</td><td>★★★★</td></tr> <tr><td>5. 에너지 절감</td><td>★★★★</td></tr> <tr><td>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국제화합, 운영</td><td>★</td></tr> <tr><td>7. 신·재생에너지의 적용</td><td>★</td></tr> <tr><td>8. 지반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td><td>★★</td></tr> <tr><td>9. 온·냉각 보충을 위한 특성화설비의 사용 용이</td><td>★★</td></tr> <tr><td>10. 환경친화적인 제품(LED등의 사용)</td><td>★★★</td></tr> <tr><td>11. 친환경 소재의 사용</td><td>★★</td></tr> <tr><td>12. 친환경 건축재료의 사용</td><td>★★★★</td></tr> <tr><td>13. 유해물질 저감 재료의 사용</td><td>★★★★</td></tr> <tr><td>14. 녹색건축재료의 활용 비율</td><td>★★★★</td></tr> <tr><td>15. 재활용·기초자원의 표상성 확보</td><td>★★★★</td></tr> <tr><td>16. 병용률</td><td>★★</td></tr> <tr><td>17. 빗물 및 유출저류수 이용</td><td>★★★★</td></tr> </table> 라. 환경 완충 등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단지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td><td>★★★★</td></tr> <tr><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td>★★★★</td></tr> <tr><td>3. 자전거주행로 및 자전거도로의 적절성</td><td>★★★★</td></tr> <tr><td>4. 생활환경시설의 접근성</td><td>★★★★</td></tr> <tr><td>5. 친환경화물·화물차량 배차</td><td>★★★★</td></tr> <tr><td>6. 운영 유지관리 문서 및 메뉴얼 제공</td><td>★★★★</td></tr> <tr><td>7. 차량주행환경 개선</td><td>★★★★</td></tr> <tr><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td>★★★★</td></tr> <tr><td>9. 단위세대의 사생활 침해예방</td><td>★</td></tr> <tr><td>10. 공동공간의 사생활 침해예방</td><td>★</td></tr> <tr><td>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유연</td><td>★★</td></tr> <tr><td>12. 세대 내 접근 용이성</td><td>★</td></tr> <tr><td>13. 출세입회금 및 수납비용</td><td>★</td></tr> <tr><td>14. 방범화물 콘택트</td><td>★</td></tr> <tr><td>15. 주차공간 추가 확보</td><td>★</td></tr> </table>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화재 및 정보통신</td><td>★★</td></tr> <tr><td>2. 제연설비</td><td>★</td></tr> <tr><td>3. 내화성능</td><td>★</td></tr> <tr><td>4. 수평피난거리</td><td>★</td></tr> <tr><td>5. 복도 및 계단 유도선</td><td>★</td></tr> <tr><td>6. 피난설비</td><td>★</td></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한국부동산원</p> </p>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열방출계수 차단성능	★★	2. 중앙공기류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공동소음도로 인접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강질 광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외부부분)	★	4. 수리용이성 (내부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태서의 경제적인 가치	-	2. 과도한 지열개발 지양	-	3. 도로나 강도·상도(하천/방파제·홍수거름반영) 최소화	-	4. 인공열·냉방에 따른 열섬·화상성	★★★★	5. 에너지 절감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국제화합, 운영	★	7. 신·재생에너지의 적용	★	8. 지반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온·냉각 보충을 위한 특성화설비의 사용 용이	★★	10. 환경친화적인 제품(LED등의 사용)	★★★	11. 친환경 소재의 사용	★★	12. 친환경 건축재료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재료의 사용	★★★★	14. 녹색건축재료의 활용 비율	★★★★	15. 재활용·기초자원의 표상성 확보	★★★★	16. 병용률	★★	17. 빗물 및 유출저류수 이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행로 및 자전거도로의 적절성	★★★★	4. 생활환경시설의 접근성	★★★★	5. 친환경화물·화물차량 배차	★★★★	6. 운영 유지관리 문서 및 메뉴얼 제공	★★★★	7. 차량주행환경 개선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생활 침해예방	★	10. 공동공간의 사생활 침해예방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유연	★★	12. 세대 내 접근 용이성	★	13. 출세입회금 및 수납비용	★	14. 방범화물 콘택트	★	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화재 및 정보통신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선	★	6. 피난설비	★	<p style="text-align: center;">녹색건축 예비인증서</p> <p style="text-align: center;">녹색건축 예비인증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건축물 개요</p> <p>건축물명 : 천안 업성구역 공동주택 건축번호 : 20280130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상성2동 120 층수 : 지하3층 / 지상39층 면적 : 344,818.4351㎡ (평가면적: 333,330.8128㎡) 건축물종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인증 개요</p> <p>인증번호 : G-SEED-P-2024-1099-9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4.12.06. - 시효종료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령일 등 일치함</p> <p>인증 등급</p> <p>인증등급 : 우수(그린2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공 2023-329호, 환경부 고시 제2023-178호, 인증기준 분할서 제12023.07.01.)</p> </div> </div>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중합등급 ★★★★★</p> <p>2024년 12월 05일</p> <p>한국부동산원장</p> </div> <p>*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2.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건축물 개요</p> <p>건축물명 : 천안 업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축번호 : 20280130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상성2동 120 층수 : 지하3층 / 지상39층 면적 : 344,818.4351㎡ 건축물의 주용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엔지니어링 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인증 개요</p> <p>인증번호 : 24-주-에-11-0173 평가자 : 김현서 인증기준 : 한국부동산원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4.12.06. - 시효종료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령일 등 일치함 인증등급 : 1+등급</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단위면적당 에너지소모량 (kWh/m²·년)</p> <p>에너지효율등급: 1+ (2등급)</p> <p>에너지소비효율: 75.1%</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단위면적당 에너지소모량 (kWh/m²·년)</p> <p>에너지효율등급: 1+ (2등급)</p> <p>에너지소비효율: 75.1%</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m²·년)</p> <p>에너지효율등급: 1+ (2등급)</p> <p>CO₂ 배출량: 26.1</p> </div>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caption>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표</caption> <thead>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모량 (kWh/m²·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모량 (kWh/m²·년)</th> <th>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모량 (kWh/m²·년)</th> <th>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m²·년)</th> </tr> </thead> <tbody> <tr><td>상등</td><td>0.0</td><td>0.0</td><td>0.0</td><td>0.0</td></tr> <tr><td>1등급</td><td>43.1</td><td>74.4</td><td>56.7</td><td>15.4</td></tr> <tr><td>2등급</td><td>30.7</td><td>35.9</td><td>26.6</td><td>7.3</td></tr> <tr><td>3등급</td><td>5.3</td><td>4.3</td><td>11.7</td><td>2.0</td></tr> <tr><td>4등급</td><td>-</td><td>2.9</td><td>8.0</td><td>1.4</td></tr> <tr><td>하등</td><td>79.1</td><td>117.5</td><td>103.0</td><td>26.1</td></tr> </tbody>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모량: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모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모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p> <p>*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1설비(가) V 설비(가)가 적용된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모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이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으로 인증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08일 한국부동산원장</p>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모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모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모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m²·년)	상등	0.0	0.0	0.0	0.0	1등급	43.1	74.4	56.7	15.4	2등급	30.7	35.9	26.6	7.3	3등급	5.3	4.3	11.7	2.0	4등급	-	2.9	8.0	1.4	하등	79.1	117.5	103.0	26.1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열방출계수 차단성능	★★																																																																																																																																												
2. 중앙공기류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공동소음도로 인접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강질 광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외부부분)	★																																																																																																																																												
4. 수리용이성 (내부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태서의 경제적인 가치	-																																																																																																																																												
2. 과도한 지열개발 지양	-																																																																																																																																												
3. 도로나 강도·상도(하천/방파제·홍수거름반영) 최소화	-																																																																																																																																												
4. 인공열·냉방에 따른 열섬·화상성	★★★★																																																																																																																																												
5. 에너지 절감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국제화합, 운영	★																																																																																																																																												
7. 신·재생에너지의 적용	★																																																																																																																																												
8. 지반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온·냉각 보충을 위한 특성화설비의 사용 용이	★★																																																																																																																																												
10. 환경친화적인 제품(LED등의 사용)	★★★																																																																																																																																												
11. 친환경 소재의 사용	★★																																																																																																																																												
12. 친환경 건축재료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재료의 사용	★★★★																																																																																																																																												
14. 녹색건축재료의 활용 비율	★★★★																																																																																																																																												
15. 재활용·기초자원의 표상성 확보	★★★★																																																																																																																																												
16. 병용률	★★																																																																																																																																												
17. 빗물 및 유출저류수 이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행로 및 자전거도로의 적절성	★★★★																																																																																																																																												
4. 생활환경시설의 접근성	★★★★																																																																																																																																												
5. 친환경화물·화물차량 배차	★★★★																																																																																																																																												
6. 운영 유지관리 문서 및 메뉴얼 제공	★★★★																																																																																																																																												
7. 차량주행환경 개선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생활 침해예방	★																																																																																																																																												
10. 공동공간의 사생활 침해예방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유연	★★																																																																																																																																												
12. 세대 내 접근 용이성	★																																																																																																																																												
13. 출세입회금 및 수납비용	★																																																																																																																																												
14. 방범화물 콘택트	★																																																																																																																																												
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화재 및 정보통신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선	★																																																																																																																																												
6. 피난설비	★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모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모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모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m²·년)																																																																																																																																									
상등	0.0	0.0	0.0	0.0																																																																																																																																									
1등급	43.1	74.4	56.7	15.4																																																																																																																																									
2등급	30.7	35.9	26.6	7.3																																																																																																																																									
3등급	5.3	4.3	11.7	2.0																																																																																																																																									
4등급	-	2.9	8.0	1.4																																																																																																																																									
하등	79.1	117.5	103.0	26.1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전동기 (라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가지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가지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가지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KS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주)디아이지엔지니어링	(주)케이엔지니어링
감리금액	6,949,923,200	1,237,003,390	2,055,256,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사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주)하나자산신탁	(주)숲이랑코퍼레이션	DL이앤씨(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부송로 43-25, 이동1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61511-0268833	110111-7736808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MMI등급	VII-0.207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92025-101-0000100	726,417,02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용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1566-9009)

■ 분양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숲이랑코퍼레이션,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디엘이앤씨(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숲이랑코퍼레이션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숲이랑코퍼레이션과 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숲이랑코퍼레이션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숲이랑코퍼레이션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숲이랑코퍼레이션과 시공사인 디엘이앤씨(주)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1

유의사항

■ 단지 및 주변여건 관련 유의사항

- 단지 주변은 향후 사업자의 개발 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동별 제연 팬룸, 쓰레기 분리수거장, 탐라이트, 근린생활시설,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부에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 2개소가 설치,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 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여부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배치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진계획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의 배치도상에 표현된 일부DA, 제연팬룸은 건물에 매립 및 인접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커뮤니티센터, 스카이크뮤니티,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등이 인접한 동은 실외기등의 설치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 있습니다. 또한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세대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은 해당 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각 실 및 발코니 외부에 설치된 창호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서는 안됩니다. 불가피하게 창호 설치구간으로 가구류 및 이삿짐 이용시는 창호에 보강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필로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등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배치도상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세대는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빗물처리시설, 저수조, 기계실, 환풍, 전기실, 발전기실, 오수펌프장, 지열기계실, 연료전지실, 펌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타공용면적에서 소수점이하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 변경을 진행합니다.
- 당 아파트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102동 지하 2층에는 연료전지 기계실이, 104동 지하 1,2층에는 지열 기계실이 계획되어 있어, 장비 가동시에는 인접 DA에서 연소공기 배출로 인하여 백연현상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제외한 각동 지붕층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하여, 공용부 전기공급으로 활용 계획에 있으며,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하여 빛반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환기를 위하여 실외기실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전열교환기의 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본 시공 시 일부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입주시 선정한 주택관리업체는 주거와 비주거의 통합 운영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구성원 결정에 따라 별도 관리업체에 인수인계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관리는 공동주택과 별개로 관리되며, 관리업체도 공동주택업체와 상이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며 공동주택과 무관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제반비용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됩니다.
- 입주 후 경관조명, 수경시설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홈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당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과 대지경계에 접한 주변 건물과의 이격 거리를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발생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구조계획 상 벽체 및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둥 또는 벽체와 간섭(उन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차면에는 주차 배면에 기둥 또는 벽체와 간섭되어 차량 트렁크에서 수화물 반입, 반출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데크면 및 102,103,105동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입주하는 업종에 따라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2,103,105동 지하에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어 미세한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2동과 103동 사이, 103동과 105동 사이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제연환풍 및 소화저수조, 발전기, 전기실 DA 구조물이 돌출되어 있어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2동 지하2층 동 PIT 및 근린생활시설 내부에 설치되며,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별도 산정되어 있고,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103동 옥상에는 인명구조용 헬리포트가 설치되어, 추후 사용시 헬로콥터 접근으로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4동 1층에는 시니어라운지(경로당)이 계획되어 상부층에는 부대시설 이용에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5동 1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 출입구 및 36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가 계획되어, 각 상,하층에는 부대시설 이용에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6동 옥탑에는 고가수조가 설치되어 있어 하부층은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레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전면부 및 후면부 좌우, 각 호실별 위치에 따라 경사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의 주차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지상1층 각 동 주변에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분진,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동 1층에는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어,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휴게공간 등의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지하1층, 지하2층은 아파트 전용으로, 지하3층은 근린생활시설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아파트 소유자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아파트 전용 주차장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내부에서 보행 및 차량 동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진입시 회차 차량과 진출 차량은 아파트 진출 차로와 합류 계획되어, 이로 인한 교통주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3층, 지하1층으로 외부에서 진입하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 진입 높이 및 램프 높이를 2.7M이상으로 적용 하였고, 지하3층, 지하1층 통행로 중 택배차 진입구간은 2.7M를 적용하였습니다. 지하2층 주차장의 램프 진입 높이와 주차통로는 높이를 2.3M 적용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차량통행외 주차공간 등은 2.1M 적용되어, 유효높이 이상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지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는 104,105,106,112동 지하1층 주변 커뮤니티센터(스포츠 코트(지하2층),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스터디라운지 등)가, 104동 지상1층에 시니어라운지, 105동 36층에 스카이크뮤니티(스카이라운지, 스카이게스트하우스), 106동 지하1층 키즈스테이션이, 107,108,113동 인근 지상1층 어린이집이, 102동 인근 주출입구에 게스트하우스, 생활지원센터, 키즈스테이션, 방재실 및 MDF, 근로자휴게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103동 지하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용역원실, 방재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레벨은 단지 배치도 및 CG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E/V홀, 계단실 등)의 평면형태 및 마감, 엘리베이터 수량 및 속도 등은 동별-라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대수는 총2,883대(공동주택(지하):2,729대, 근린생활시설(지하):154대)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주차위치 및 방향은 단지 및 공사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저층부는 석재, 도장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면적 및 자재 적용비율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여건 등에 의해 색채 등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트렌치의 일부구간에는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으로 문의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출입구 및 외부도로 도시 및 교통 계획에 따라 설치되며 임의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외부도로와 단지 내부의 단차로 인하여 일부구간은 옹벽 등이 설치되며, 시공중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동측으로는 연결녹지가, 남측으로는 근린공원이, 대지 서측으로는 경관녹지가, 대지 북측으로는 4~6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금번 분양 단지와 무관하며,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부기등기되어 있으며, 공동주택부지 이외의 토지(근린공원, 도로 등 기부채납시설과 북측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등 개별 사업부지)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부기등기되어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과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시설부지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외부 레벨차로 인해 101동, 109동 전면, 107동, 108동 측면, 105,106동 배면에는 단차가 생성되며, 기타 등에 대해서는 개인차에 따라 레벨차를 인지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급속, 완속용 전기차 충전설비는 공동주택용은 지하1층 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은 지하3층 주차장에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층 동출입구와 전기차 충전설비간 거리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동주택용 급속28대, 완속 166대, 근린생활시설용 급속2대, 완속12대가 되어있으며, 향후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 및 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서류의 결격, 관계 법령 위반 및 기타)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타인 명의로 가입, 타인의 입주자저축을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자산 및 소득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에 상기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계약체결 후 발견 시 계약 취소)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하여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니 각별히 유의하여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
- 상가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청약통장 사용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로 서면통보(우편, 인터넷, 팩스)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신청자 및 당첨자는 주택형별로 제시된 공급금액에 대하여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은 변경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분양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에 변경내용을 포함한 정정공고를 청약접수일 전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신청자들은 청약신청 시 변경 및 수정사항을 숙지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이전에 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본 주택의 청약신청 또는 당첨이 무효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자 자격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청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업 또는 당사업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기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당첨 후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사항

- 본 사업은 천안업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공동주택사업으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일반분양전환임대주택을 시행하는 사업[사업주체 : 하나신탁자산, 시행위탁자 : ㈜숨이랑코퍼레이션, 시공업체 : 디엘이앤씨(주)]을 포함합니다.
- 일반분양전환임대주택 세대수는 도시계획 변경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각종 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주택전시관은 비치된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계약서에 표시된 건물의 계약면적, 내부레이아웃 등은 향후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라 일부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전항의 사유로 인하여 각종 인쇄물, 주택전시관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일부 변경된 것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 근처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 보행로의 경우 근접 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펌프실)이나 빗물이용시설 펌프실, 환룸, 발전기실 등 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타공용면적에서 소수점 이하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 변경을 진행합니다.
- 단지 주변 근린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준주거시설 용지, 주차장 용지, 고등학교용지, 유치원 용지 등은 본 단지과 무관하며 해당시설의 변경에 따른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차량출입구 위치 및 차로의 너비 등은 교통영향평가로 결정된 사항이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의 공동주택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방식입니다.
- 공고문에 명기된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는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공고문의 제반 내용은 승인된 건축허가 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계약 전 단지 여건(기반시설 위치, 분묘,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법정오차 범위 내 면적 증감에 대한 별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층별 공급금액이 상이합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지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도시 기반시설 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 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단지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형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일부 변경된 것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종 기반시설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특히,전기 인테리어 공사(배관, 배선, 자재변경)로 인해 홈네트워크 system 연동이 안 될 시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해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급 계약해지(해제)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건축허가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사는 디엘이앤씨(주)이며, 디엘이앤씨(주)가 본 사업의 시공, 준공, 분양, 입주, 하자, 민원처리를 종합 관리합니다. 단, 소방시설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분리하여 별도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 입주 후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지하1층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의 시설에 사무공간 및 보관장으로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성능개선, 운영 등의 사유로 위치, 크기, 면적,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입주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니어라운지(경로당), 어린이집, 생활지원센터, 게스트하우스, 키즈스테이션, 드포엠키페(주민카페), 통합커뮤니티, 스카이크뮤니티, 키즈라운지(다함께돌봄센터),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등은 관계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 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전기실, 펌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식재, 시설물 등)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주택전시관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최종 사용승인도면으로 변경, 법적용어 사용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계획은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마감사양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사업당사자의 타 현장 및 타사 현장과의 비교를 통한 사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근린공원과 연결녹지 내 보도 포장 및 단지내 보도 포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주동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키즈라운지(다함께돌봄센터), 시니어라운지(경로당), 스카이라운지 등)은 입주 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주민공동시설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 운영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따라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지자체 요구로 인해 준공 이후 추가요금이 분담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각 동 출입구 게시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원격검침 설치 시, 검침데이터를 도시가스사에 제공합니다)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및 설계관련 유의사항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설계변경이 공사기간 또는 준공이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전용, 공용 등)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소유자의 대지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축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Mock up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 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2006.1.23.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인허가 진행 시 인허가청 협의 사항 및 인가조건 사항들을 이행함에 있어 설계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사업부지 경계선 내부의 건축한계선을 따라 설치된 보도(대지소유 : 아파트입주민, 이용 : 공공에 이용토록 함)는 공공보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사업부지 경계선 외부를 둘러싼 도로(보도) 등(대지소유 : 천안시)에 대해서는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보도)이며 공공보행로에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등 공공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CG에 표현된 문주는 예시이며, 문주설치를 위한 설계변경 후 실시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을 만족시키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에 따라 일부 동 옥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며, 용량에 따라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향후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일조 환경상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 수인한도가 만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단지 배치도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고하여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본 사항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일조환경분석보고서는 주택전시관에 비치하고 있으니 별도 확인 바랍니다.)

일조환경 만족세대	일조환경 불만족 세대
1,274세대 (72.3%)	489세대 (27.7%)

■ 주택전시관 관련 유의사항

- 주택전시관은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주택전시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84A타입, 125타입 주택형의 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계약 전에 주택형별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부분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분양홍보물,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변경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여건 등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등급,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홍보자료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인·허가 조건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주택전시관,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주택전시관을 우선으로 함)
- 견본세대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도서(단위세대 전등, 전열 배선도)의 단위세대 배선기구류(스위치, outlet 등),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함 등의 설치위치, 수량, 사양, 타입 등은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내 설치에 따르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건물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아파트 계단창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정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에 들어가는 단위세대 실명 및 세부 부속실 실명은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인허가 도서상의 실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표현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고정방법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별 용도 및 면적,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옥상구조물의 형태나 주동 입면의 패턴, 색채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모형에 제시된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형태, 마감방법 및 색상은 구조안전성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형에 제작된 DA 등 설비 시설물의 규모는 기계설비 작동을 위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형태나 주동 입면의 패턴, 색채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및 분양홍보물 등에는 주택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편의를 위하여 약식으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는 실제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는 최하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설치됩니다. (동별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에 따라 최하층 세대가 2층 또는 1층인 경우가 있으며, 최하층이 2층인 경우만 완강기가 설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시공되는 건축법상의 하향식 피난구는 주택전시관 견본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와 제품사양 및 힌지 방향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비상조명, 시각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세대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견본세대 안내 영상홍보물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PVC창호,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건립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능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공급금액에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건축허가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외관 디자인(석재 종류, 석재 적용 부위, 석재 메지, 도장 줄눈, 도장 색상, 난간대, 캐노피 등)은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녹지, 산책로, 학교 등)과 도시기반시설(교통시설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정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주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녹지 및 학교 등과 연결되는 통로 및 보도 구간은 주변 현황 및 레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정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허가기관의 협의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녹지 및 학교 등과 연결되는 통로 및 보도 구간은 주변 현황 및 레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도로계획 및 시설 중 시공사의 시공분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구역외 도로에 관한 사항은 시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거실 실링팬,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관련 유의사항

- 단지 북서측 직선거리 450m~820m이내 천안 제2, 제3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며, 250m이내 자동차 매매단지가 인접하여, 대기질 영향 및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으로 성성호수공원 방문자 센터 및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단지 주변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남측으로 근린공원, 성성호수공원, 완충녹지, 조류관찰원이 위치하고 있어, 인접 공원, 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성성호수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성성호수주변 우수저류조 및 침사지, 제방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기후 환경변화 및 시설 이상 등으로 인하여 만수위시 일부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남측으로 근린공원, 성성호수공원, 완충녹지, 조류관찰원 시설내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 및 금개구리 등의 양서류 및 각종 조류 등으로 인하여 단지내 오염원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이후 해당 양서류 및 조류 등이 단지내 유입시에는 법정 보호종 유무를 확인후 관계기관 신고를 통하여 적법한 적절한 조치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 단지 남측 근린공원 내 보존수목 위치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저층부 세대는 호수 시야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구역외 도로인 중로 1-162호선(왕복4차로), 대로 3-43호선(편측2차로),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중로 1-211호선(왕복4차로)는 입주 시점에 맞추어 완공 예정이며, 도시개발사업 구역외 중로 1-211호선(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 동일한 1-211호선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도시개발구역 외 구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 당 사업지의 입주 시점과는 무관하며, 해당 노선의 개설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당 사업지의 사업주체, 시행위탁자, 시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는 도시개발계획 및 업성지구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서측 중로 1-211호선, 북측 대로 3-43호, 중로 1-162호선, 중로 2-357호선, 중로 2-358호선, 소로 3-1469호선 도로 인접동의 세대는 교통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는 심의, 인허가 기관 또는 안전이나 현장여건 등 기타의 이유로 도로의 제원, 평면 및 종단선형이 모형이나 현재의 설계와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측 부출입구 주변 회전교차로는 업성3 구역 인허가 과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으로 준주거시설용지(4~6층) 및 주차장 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개발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으로 (가칭)천안성성고, (가칭)업성2유, 단지 서측으로는 (가칭)업성2초의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으나, 학교용지 유지, 개교 시기 등은 교육청 정책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경관녹지내 30㎡ 규모의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예정이나, 천안시 및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단지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로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측 근린공원시설내 오수펌프장, 간이화장실 및 저류조 및 침수 예방시설이 설치 예정으로 이로 인하여 냄새 및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레벨 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 부위는 사면처리 또는 옹벽, 조정석, 산석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옹벽, 조정석, 산석 디자인 등의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의 옹벽, 조정석 산석 등의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인접 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101,102,106,107,108,109동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해 입주 후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교통장애,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단지 인근 개발계획 및 예정사항은 일부변경,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의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현재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중로 1-211호선 도로는 입주민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소음포장공법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단지 주변도로의 방음벽 미설치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소음도 측정결과에 따라 모형이나 설계도서에 표현되지 아니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근 세대의 민원이나 인허가기관의 요구 등으로 방음벽이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용검사 단계에서 소음도 측정결과에 따라 소음 저감을 위해 모형이나 설계에 표현되지 아니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는 방음벽 미설치구간 및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대지면적의 증감 발생 시 등기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유의사항

- 청약 및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사업승인변경도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지반층)에는 각종 배선, 배관, 옥외송수구함, 환, DA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조경석, 산석 등은 입주민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민은 주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지 지상 차로는 비상차로로 소방차, 구급차를 위해 계획되었음을 참고 바랍니다.
- 단지 내부 공용장소인 어린이 놀이터, 필로티, 설비환기구(DA), 발전기실 및 환기구(DA), 전기실, 쓰레기 보관소, 엘리베이터(주동 및 외부),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태양광패널(예정), 옥상 배기구, 웨더스테이션, 보안등 및 조경등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빛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는 도로의 높이 차이 및 단차가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내, 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므로,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로 진입하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은 주택전시관에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상 자전거 보관소 등은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특히 저층부)는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층 PIT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용 급/배기구와 같은 설비 환기구가 일부 저층 세대와 인접 또는 연접되어 있으며 해당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구조물,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등과 같은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출입로와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차량전동등 및 출차경보음 등에 의한 생활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CG 및 설계도서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주출입구와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진출입로의 출차 입구가 인접해 출차 경보음에 의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CG 및 설계도서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라인 및 배치,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은 공동주택용은 1층에, 근린생활시설은 지면층인 지하2층에 설치되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고,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식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하여 외부 창호 주변에 돌출장식물, 물딩 등이 설치되어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세대의 평면도, 입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아파트용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용 지하 3층), 각 주동 공용홀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 출입구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 자동차와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동 및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리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피뢰침에 의한 진동, 소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저수조, 배수조 및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은 현장여건에 의한 경미한 건축허가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 규모,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은 단지 주출입구(문주 주변)와 부출입구 107동 지하주차장 출입구 옆에 위치 합니다.(2개소)
- 동·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출차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108동, 107동, 113동 인근에 어린이집, 104동 지상1층에 시니어라운지, 112동, 104동, 105동과 106동 사이 지하1층에 계획된 커뮤니티센터와 해당시설에 필요한 지상부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보관소, 주민공동시설 등)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각 동당 1개소씩 동 부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각 근생별 1개소씩과 102동 지하2층 통합형 1개소로 총 3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 및 빌트인 가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태양광 설비는 본 공사 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태양광 위치는 공동주택 지붕에 설치 예정이며, 시공 및 인허가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민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는 동과 층이 있으며, 채광·환기창의 설치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최상층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카 이동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등) 벽체 및 천장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상, 하차 시 차량 및 신호수의 육성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의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구간 및 깊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식재,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위치는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위치나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에 의해 각 동별 출입구 레벨이 상이함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진입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만족하며 유효 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무인택배보관소는 각 동 지하1층 주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됩니다.이에 따라 특정 호수에서의 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케이블트레이 설치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린생활시설의 케이블트레이의 일부분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 레벨은 현장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단 및 램프의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상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삿짐 운반 도중 파손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달로그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각 동 필로티 및 진입로 부위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위치한 동은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벽 마감은 저층부는 석재, 그 외 구간은 수성페인트 도로로 시공되며, 향후 석재마감 범위, 석재 종류, 줄눈, 색채 계획은 인허가 및 시공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내 주차차단기는 각 시설별 주차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며, 공동주택 입주민은 공동주택용 주차 구역내 주차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주차 구역내 주차 할 경우 주차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 구역 내 주차 시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사업당사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 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외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하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부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사, 비상 전용 출입구이며, 주차장 출입구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 동선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소 수량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주 및 전선로 등이 지중화될 경우 단지 내부에 한전공급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커뮤니티는 112동, 104동, 105동과 106동 사이 지하1층 커뮤니티센터(스포츠 코트(지하2층),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미니짐, 스포츠코트(다목적체육관), 패밀리 시네마, 레슨룸, G.X룸, 키즈라운지(다함께돌봄센터)등)이 계획되어 있어 상부세대는 소음 및 진동에 영향이 있음을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공용부 마감재 안쪽(천장, 벽체)에는 전기, 통신, 소방 시설물을 위한 가요성고속외장케이블 및 기타 부속품들이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의 바닥 레벨은 공사 중 현장 여건에 따라 레벨, 조정 및 토목 계획(식재, 보도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옥상에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모듈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 수량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설비는 본 공사 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입주민은 근린생활시설의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간에 주차 구역 분쟁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 세대는 소음(출차주의 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CTV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놀이터, 각 동 출입구, 수경시설, 키즈스테이션, 쓰레기 처리장, 세대 창고, 주동 1층 계단실, 최상층 계단실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함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 합니다.
- 공용부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 또는 동파방지장치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부 전기료에 포함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전기 인입용 한전패드(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용)가 설치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 및 정압기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천안시 및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보안등, 가로등, 공원, 경관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불빛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이행, 관련법령 개정,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의 구성 및 건축계획은 인·허가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세대는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세대 수도 계량기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근린공원 및 완충녹지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조성된 공간에 대해 외부인의 통행 제한이 불가하오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 출입구, 창호, 주차 램프 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의 입면 디자인 및 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아래쪽에는 아파트 오수펌프장이 매립 시공되어, 접근 보행로 통행시 점검구 및 배기구를 통해 악취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오수관로 일부 배출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오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상부로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한 탐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주차장은 지하3층까지 구성되어 있으나, 지하 1,2층은 공동주택 전용 주차장으로, 지하 3층은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보행 및 차량 동선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택배차량은 지하1층, 지하3층만 접근 가능하며, 지하2층은 택배차량이 진입이 제한됩니다.
- 104,105,112동 지하2층 지하주차장 주변 및 동 하부내에는 보행 및 차량 경사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3층에 운영합니다. 설치 위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인접한 동(102,104,106,107,108,109,111,113동)은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8동 부근 실외 주민운동시설이, 104과 105동 부근 부대시설 선큰 및 출입구, 112동 전면에는 드포엠키페 및 수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및 생활권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105동 1층 주출입구는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 출입구가 인접 형성되어 있어, 소음 및 생활권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105동 36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스카이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이 위치하므로 하부층 세대는 인해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전면 PIT와 105동 부근 외부계단 일부 오수관로 수직 배출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전면에는 연료전기 급배기 및 104동 배면에는 지열 기계실 급배기탑이 노출되어 있어 이로 인한 진동 및 소음,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대지 남측 데크면 및 102,103,105동 지하층에는 근린생활시설1,2가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등 환경권 및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1,2와 아파트는 각 1개소씩 외부계단 및 ELEV 등으로 동선이 연결되어 있어, 외부인 출입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실외기가 102,103,105동 지하층 PIT내 계획되어 이로 인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2동은 지하 2층 PIT내 근린생활시설 음식물 쓰레기실 및 DA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는 이로 인한 악취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102동 지하2층 주변에는 연료전지실이, 103동 지하주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용 소화저수조 및 전기실, 발전기실이, 104동 지하층 주변에는 지열기계실이, 108동 지하층 주변에는 기계실,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이, 101,104,106,108,111동 지하층 주변에는 빗물이용시설 펌프실 및 관리층이 설치되어 냄새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101,102,103,104,108,109,110,112,113동 지하1층 지하2층 동주변에는 주차장 환풍이 설치되어, 지상1층 돌출구조물의 DA가 설치되고, 작동시 저층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지하1층 출입구 주변에는 주출입구로 연결되는 외부 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102동 입주인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2동, 104동, 105동과 106동 사이 지하1층 커뮤니티센터(실내골프연습장, 미니짐(가죽운동실), 피트니스, 레슨룸 등)가, 104동 지하1,2층 주변에는 스포츠코트(다목적체육관)가 위치하여 이로 인한 지하 주차 이용시설 제한 및 미세한 진동 및 소음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102동 지하1층 주변에는 카셰어링 주차장이 계획되어 주차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1호 2층 세대는 부대복리시설(시니어라운지) 지붕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다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청소 또는 관리자의 유지관리 동선으로만 사용됨을 확인 바랍니다.
- 108,109,112동 주변 지하주차장내 3개소 및 104동 주변 지하1층 부대시설내 계획된 계단실은 비상 소방시 활용되는 계단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 이동편의 요구시에는 각동 ELEV 및 부대시설 전용 ELEV를 이용하여야 함을 인지 바랍니다.
- 102,103,104,106,109,110,113동 옥상층에는 이동통신용 옥외 안테나와 중계장치가, 지하주차장 지하1층, 지하 2층 103,108,110,112동 주변 환풍 4개소에는 이동통신 중계장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시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에는 해당시설에 필요한 실외기실로 인해 인접한 세대 미관 저해, 소음, 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형 및 주택전시관내 비치된 사업승인변경도서의 계획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부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진출입 차량 소음 및 차량 경보기 소음등으로 인접세대 미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지하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및 용역원실, 방재실, MDF실이 계획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 계약자가 이용하는 구역으로, 세부 운영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 105동 스카이라운지 전용 엘리베이터는 지하1층, 1층 스카이라운지(36층)만 운행하며, 전용 홀에서만 탑승 가능합니다.

■ 입주 관련 유의사항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홈페이지, 리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 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 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공사 중 폭염/한파, 전쟁,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신설 및 개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육·교육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단지 내 세대와 임대주택 세대 입주민을 포함한다.)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70% 까지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외부에서 배정될 수 있으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천안시(천안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는 「주택법」 제35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단지의 입주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 11조에 따라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민 의견 수렴 및 의결 절차 등을 통하여 단지 내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의 운영 방안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공간확보를 위하여 1층 일부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가정어린이집은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자도 가정어린이집 인가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배치여건, 학생배치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여부는 관할 교육청 소관으로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 등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추진계획의 변동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민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배치는 향후 주변 개발사업 및 학생 발생 추이, 교육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관할 교육청과 재협의를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배치계획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학교배치(배정) 시기가 지연될 시 입주예정시기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별도의 통학편의(통학버스 운영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련 유의사항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제공), 비품(제공 안함)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출입구 주변에는 경비실, 키즈스테이션, 생활지원센터와 게스트하우스가, 부출입구에는 경비실 및 키즈스테이션이, 104,105,106,112동 지하층 주변에는 커뮤니티센터로 스포츠코트(다목적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미니집(가족운동실), 키즈라운지(다함께돌봄센터), 프라이빗오피스를, 스터디라운지, 프라이빗스터디룸, 스터디 라운지, 레슨룸이, 105동 지상36층에는 스카이크뮤니티(스카이크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가, 104동 1층에는 시니어라운지(경로당)가, 107,108,113동 인근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이, 112동 전면에는 드포얌카페(주민카페)가 계획 되어있으며, 인접한 동 및 세대에서는 주민공동시설 내부조명 및 외부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사용에 따른 층간소음, 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과 운영에 따른 기타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부대시설 하부 지하2층에는 부대시설 이용을 위한 기계실 및 오수펌프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센터, 어린이집, 시니어라운지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인 대상으로 영업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시스템 구성 및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적용되는 공기청정형 냉·난방기의 경우 실별 시스템에 따라 일부 구간은 일반형 냉·난방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선근 구역에는 냉난방 시스템 가동을 위한 설비(실외기 등), 부대시설 환기용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주는 부대복리시설에 포함되며, 문주 설치를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태양광 패널, 지열, 연료전지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용관리비로 부과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1층 부대시설 내부 및 105동 36층 내부에는 방화구획에따른 경계벽 및 방화문, 방화스크린이 계획되어 있어, 추후 인테리어 공사 등의 사유로 변경시에는 지자체 기관의 적법한 변경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개선 및 본 시공 시 공사여건 등으로 인해 천장고 및 접근 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 식재(수종 및 배식) 및 시설물(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외부 주민운동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은 팸플릿 등 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지붕층 상부에는 고층 세대의 미관개선의 인허가 의견으로 새덤식재가 계획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시설접근이 제한되며, 관리자에 의해 유지관리가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일부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인허가 과정,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 시 확정됩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키즈스테이션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 인접한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 이행 등에 따라 실제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실명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속동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 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 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준공 및 입주 후 일정기간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 외부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에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 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 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제습기, 배수펌프, 환기 장치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 · 조망권 · 소음 · 진동 ·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개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단지 내 아파트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경우 동 당 1개소씩 계획되며,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3개소 계획되어 단지 내 총 16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장까지의 거리는 동별 상이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분양 시 표현된 위치와 규격에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인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분진,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설치된 동에는 필로티 내 자전거 보관대, 휴게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마감 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분양 시 표현된 마감에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지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방형으로 설계되어 단지 경계부에 펜스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파고라에는 별도의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동 주변으로 소방을 위한 공기안전매트구역이 설정되는 경우 해당 구역에 교목 및 관목이 식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경비실 및 진입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또는 비내력벽은 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지반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등의 층고, 지하 주차장레벨, 램프의 위치, 옹벽의 형태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규모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타 공용구간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동 표시, 외부색채, 외관 및 옥탑디자인, 옥탑구조물, 지붕, 입면디자인(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길이 및 높이 등), 조명시설, 담장, 안내시설물, 조경시설물, 동 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정비계획 시행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공청 및 위성안테나,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 피뢰침, 이동통신 설비등의 시설물, 경관조명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패널 설치 위치는 105동을 제외한 각 동 옥상에 설치 예정이며, 태양광 패널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태양광 패널에 의한 빛반사, 진동,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 웨더스테이션(기상측정장비)은 102동에 설치되며, 웨더스테이션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웨더스테이션에 의한 진동, 소음, 전자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TV 안테나 설치 위치는 111동에 설치되며, TV 안테나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TV 안테나에 의한 진동, 소음, 전자파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의 옥내안테나 설치 위치는 102,103,104,106,109,110,113동 지붕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동통신설비의 중계장치 설치 위치는 102,103,104,106,109,110,113동 지붕층과 지하주차장 1층, 2층 103,108,110,112동 주변 헬름 각층 4개소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설치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의 동은 지하주차장 램프 차량 진출입에 따른 경고음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정전 등 비상상황, 주기적 유지관리 또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필요에 의해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될 시 108동(아파트용), 103동(근린생활시설용) 부근 D/A를 통해 매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 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부 마감재의 석재 설치에 의한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옹벽,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조경시설물, 동 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조건이행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계획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형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저층세대 및 이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당해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소음 발생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전원은 공용 전기 요금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스포츠 코트, 미니집,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G.X룸, 키즈라운지(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와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식재 수종,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물과 식재는 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외부 복도 및 105동 스카이크뮤니티 외부 난간 형태는 인-허가 및 현장 시공 단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6동 1개 코어를 제외한 각동 아파트 옥탑은 건식(모듈러)공법이 적용되어, 지정패널 마감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시공사인 DL이앤씨 특허 기술이 반영된 무량판 구조와 PC구조(벽식 T프레임 구조)가 같이 계획하여, 구조심의를 득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해당 구조는 육안상 다르게 보여지고, 마감됩니다.
- 지하 1층 무인택배보관함은 보행동선,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부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사업주체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당사자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페인트, 뿔칠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조명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배치 유의사항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보안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 차량 동선 등), 부대 복리시설(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조정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정(수목, 조정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단지내 보행통로 내) 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는 지형의 특성상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모형 및 주택전시관내 비치된 사업승인변경도서(2025.01.13.)에서 위치를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 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101동 동측에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북측에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북측과 북동측, 남서측에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남측에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 북측과 남서측에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동 남서측에 휴게정원,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동 남서측에 어린이놀이터, 남동측에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8동 남서측에 어린이놀이터, 야외운동공간, 남동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9동 북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0동 남동측과 남서측에 휴게정원, 북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1동 남서측에 휴게정원,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 북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2동 북측에 휴게정원, 남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3동 북측에 휴게정원, 남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1층 및 지하층에는 시니어라운지(경로당), 드로오피카페(주민카페), 키즈라운지(다함께돌봄센터), 커뮤니티센터(스포츠클럽(다목적체육관), 미니집(가족운동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등), 근린생활시설, 지하펌프실, 전기실등의 부속시설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여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12동, 113동 주변(부대시설 옥상, 측벽, PIT, 썬큰 등)에는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101,102,103,104,106,108,111동 지하층 주변에는 펌프실/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빗물이용시설/연료전지실 등이 설치되어 냄새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아래쪽에는 오수펌프장이 지하에 매립설치되어 점검구와 통기관이 노출시공되고, 이로 인해 근접 보행로 이용시 냄새 및 해충, 진동, 소음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대지 남측 데크면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해당시설에서 102,103,105동은 지상1층 주변으로 이동동선이 계획되어 이로인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DA 및 계단실, ELEV가 근린생활시설 내부 및 아파트 지상1층 단지 내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102,103,105동 지하 PIT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103동 지하층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용 소화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이 계획되어, 이로인한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변경도서상 단지내 레벨차에따라 계획된 계단 및 옹벽(산석, 산벽, 조정석 등 포함) 등의 단차시설물 사항은 레벨현황에 맞게 삭제 또는 축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가 지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및 냄새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팬룸, 지열기계실, 연료전지기계실, 빗물이용시설, 소화저수조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팬룸 및 기전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보관소, DA(펌프실, 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부 레벨차로 내외부의 보행 및 차량, 비상차로 연결동선 일부는 경사로 및 계단으로 연결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통로는 개방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정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심의 인-허가 조건 이행,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옹벽 형식, 소단계획 및 조정계획 등이 변경되어 모형이나 현재의

설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 등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일부 지형 단차구간에 생울타리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 및 인접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 연결송수구가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수경시설에 수질정화설비를 반영할 예정이나, 이는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장하지 않으며, 수질은 담수기간, 이용횟수 등 운영 및 관리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열린 단지로 계획되어 출입제한을 위한 헨스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동별 유의사항

- 각 세대별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홍보물 및 단지배치도 등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112동 서측으로 수경시설을 포함한 드포엠카페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는 112동, 104동, 105동과 106동 사이 지하1층 커뮤니티센터, 105동 36층에 스카이크뮤니티, 104동 지상1층에 시니어라운지(경로당), 107동, 108동, 113동 인근 지상1층에 어린이집, 101동, 102동 인근 주출입구에 게스트하우스, 생활지원센터, 방재실 및 MDF, 근로자휴게실이 배치되어 소음, 진동 등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단지배치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부출입구에는 통학차량 정차를 위한 Drop off-zone과 키즈스테이션이 각각 설치 예정이오니 모형과 배치도에서 위치 확인바랍니다.
- 101,102,103,104,105,106,108,111동 지하층 인근에는 펌프실/저수조/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되어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102,106,107동 사이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램프가 계획되어있어 차량 진/출입시 조명/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및 소음, 진동, 세대 빛공해(눈부심) 등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02,103,105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업종이나 실외기로 인하여 저층부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03, 108동 1층에 인접하여 기계실,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계획되어, 점검/가동시의 연기가 발생합니다.
- 104,105,106,112동은 지하 커뮤니티센터가 인접하므로 주민들의 커뮤니티시설 이용으로 인한 소음 및 주차 이용성 불편 등의 발생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4,106,107,108동 지상1층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104동 1층에는 시니어라운지(경로당)와, 105동 1층에는 스카이크뮤니티 출입구가, 112동 인근에는 드포엠카페가, 113동 주변에는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의 부대시설 이용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사전 위치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통학에 이용되는 보행로 주변 저층부 세대는 주민의 보행로 사용으로 환경권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102동 전면, 106동 북측, 105동 북측에는 단지 단차레벨과 데크층을 연결하는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 동선이 계획되어 있어서 주민들 출입으로 인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3동, 105동 전면에는 지하층 근린생활시설과 지상1층을 연결하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 동선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 및 외부인들의 출입으로 인한 소음 발생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1,102,103,109동 지상1층 일부 코어는 배치구조상 배면부 동출입구 진입동선 형성으로 인하여 출입구 너비가 협소하며, 이로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12,113동은 단지내 통경축 간섭으로 동에 인접하여 쓰레기 보관소가 계획되어 있어, 이로인해 저층부 세대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106동 인근(DA환기구)에는 사우나 보일러용 연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세대 인근에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및 일부 층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보관소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근 저층부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 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 내 창 크기는 주동 및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101동, 102동, 106동, 107동은 차량 및 비상차량(이삿짐, 소방차량 등)의 출입에 의하여 소음, 진동, 불빛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대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은 보행동선,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외부 도로에 인접한 등의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외부 보행자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필로티 인근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송수구 및 상수도소화전 위치가 세대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일부 위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외벽에 환기 장치 및 세대 화장실 직배기관련 외부마감캡 설치가 되며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주차구획 배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지하 최하층 엘리베이터 홀에는 제습기가 설치 예정입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각 동 지상1층 로비(또는 엘리베이터 홀)에는 환기 및 보조냉방을 위한 복합환기 장비가 설치되어 가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용관리비로 부과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되며, 일부 커튼월록 설치구간에 가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02, 103, 105동 일부에 커튼월록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동 일부세대에는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의 층변화세대 및 최상층의 공용 PD 및 AV실에는 배관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요금은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시니어라운지(경로당) 옥상 관리 여부에 따라 난간이 설치될 수 있고 프라이버시 등 생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지 107동, 108동, 113동 인근에 어린이집, 101동, 102동 인근 주차입구에 게스트하우스, 생활지원센터, 방재실 및 MDF, 근로자휴게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옥상 관리 여부에 따라 난간이 설치 될 수 있고 프라이버시 등 생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 공사에 따른 줄눈나누기, 마감 및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인접한 103동과 105동 사이, 107동과 108동 사이는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의 ELEV.홀 내부의 EPS/TPS, PD/AV실의 위치는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붕층에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모듈 계획되어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탑 및 옥상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경안테나, 피뢰침(축벽포함), 경관조명, 태양광발전설비, 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 장비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을 제외하고,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 및 최상층세대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과 지상 일부공간 등에는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장소 및 수량은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설치됩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조형물 상부에 도장 미 시공)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의 디테일, 적용 구간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공용부분을 임의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별로 최상층, 펜트층 및 스카이 커뮤니티 계획으로 동일한 층이라도 배치되는 세대의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동별 옥상에는 통기관이 노출 시공되며,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관련 유의사항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건축허가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실외기실에는 인접세대로 피난을 위한 건축법상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필로티 세대의 최하층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피난구는 비상시 사용을 위한 것으로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 하여서는 안 되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실외기실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과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피난구는 층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거실, 침실, 주방/식당 공간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개방성 확보 및 입면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외부 창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평면이라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견본세대 CG는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전평형 발코니 확장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바랍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은 수납 목적이 아닌 후드 장비 및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벽체, 장식 커튼월 입면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세대내 환기를 위하여 실외기실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수량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 및 복도에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설치되는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수량, 타입은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빌트인가전,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회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욕실화와 욕실 도어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지 배치도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천정물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도배홀이 설치되며 주택전시관 내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 색상과 외장재, 개폐방향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액세서리 및 콘센트)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창 미개방 가동시 냉방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릴창 근처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단위세대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 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타입 선택 시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 장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 빨래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택형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위치 방향, 마감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공사여건 및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 크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 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의 위치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하향식피난구 위치에 따라 세대 환기 장치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일랜드장 가구의 위치를 임의로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 및 마루 미시공면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되었으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문틀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 및 화장실의 배기 방식은 당해 층 직배기 방식으로 별도의 공동 배기덕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화장실의 배기팬은 천정 노출형 팬이 설치됩니다.
- 세탁실에는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LG 오브제, 삼성 비스포크 세탁기 건조기 규격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세탁기/건조기는 수평배치 가능하도록 적용되었으나 규격 외 대형 제품설치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개별보일러가 설치되며, 개별보일러 점검 시 점검공간 확보를 위해 세탁기/건조기의 위치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발코니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배치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으며, 2단 적층시 사전에 공간확인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홈서버,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정내부의 설비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발코니에는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발코니에 일부 가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에어컨은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될 수 있으며,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의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실측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 2층 이상의 세대 발코니에 인접세대 대피를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단, 인허가청 의견으로 최하층 2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대신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 침실1에 천장형 냉매배관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공사가 필요하오니 사전에 이 점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은 기본 제공인 천장형 냉매배관을 활용하여 시공하므로, 옵션 판매가격에서 해당 배관의 금액은 제외하여 반영되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점이 냉매배관 착수 시점 이후인 경우, 공정상의 이유로 시스템 에어컨 브랜드 선택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세대의 경우 LG브랜드 기준으로 천장형 냉매배관이 제공됩니다. 입주 후 별도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개별 설치 및 시공되는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별 입주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 일부 콘센트는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되며, 의류관리기 등 고용량 가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e편한세상 전용 앱을 통하여 세대 내 기기 제어(조명, 난방 등)가 가능하며, 월패드와 연결되는 세대기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안쪽(천장, 벽체)에는 전기, 통신, 소방 시설물을 위한 배관, 배선, 케이블 및 기타 부속품들이 일부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스위치 및 콘센트의 색상, 규격 및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됩니다. (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전기기기(월패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 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의 수전 및 하수구 위치는 미러형 세대 미러하여 설치되지 않으며, 전세대 우측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 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됩니다.
- 세대 욕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 내 설치된 월패드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전기, 설비 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팬던트 조명용 예비 스위치가 제공되며, 팬던트 조명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침실 내 도어 후면, 신발장, 드레스룸 등 벽면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배관라인(보통 수직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TV, 욕실스피커폰, 전동빨래건조대는 제공되지 않으며, 제공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임의로 추가 설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트월 및 복도 패널 마감의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타일, 벽 판넬 등의 마감재는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상판 등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 스톤, 세라믹패널의 이음매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과 바닥의 마감재는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주방벽의 마감재는 제조사,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천장 몰딩의 재질, 규격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치수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재의 점검구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손끼임방지 장치는 도어면 외부로 돌출될 수 있으며 디자인, 소재, 색상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천정, 벽, 바닥 등의 내부 마감은 시공성 개선에 따라 실시공 시 마감 상세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정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홍보물 등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현관, 신발장,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은 마감여건 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조건 이행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 덕트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바닥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와 면한 발코니 벽체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과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 수전, 실외기실에 선홍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 사다리는 필로티 최하층(필로티가 하부에 있는경우, 필로티의 상부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설치됩니다.(동별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배치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 설치 및 완강기 설치세대가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샐리,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발코니가 연결 되어진 경우 각 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서비스 면적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는 세대환기용 유닛 및 덕트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동절기 결로 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발코니확장 공사는 현재 전세대 확장형으로 공사 예정으로 향후 공사일정 등의 이유로 인해 발코니 미확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내.외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개폐방향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 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패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엔지니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제공되는 욕실 출입문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 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욕조의 경우 본 공사 시 제조사,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가구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 시 Staple Tacker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포세린 및 도기질, 자기질 타일, 패널형 마감재 등은 대형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적 특성상 이음매가 노출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무늬(베인)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문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슴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힘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 목재, 엔지니어드스톤,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고, 마감재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무늬,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패널형 마감재는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힘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 및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카달로그 등 홍보물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빌트인가전,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공기배출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하며, 루버 부근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비확장발코니, 욕조하부, 샤워부스, 현관팬트리 등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수전류, 바닥배수구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주방가구 후드장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수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이질재 접합부의 코킹(실리콘)은 주택전시관과 동일하게 시공예정입니다.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 가입시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펜트하우스 세대의 테라스 적용구역(아래층의 지붕)은 공용공간으로, 해당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 요구 시 반드시 개방해야 하며, 등기를 통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또한 테라스를 임의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방수층을 손상시키는 등의 사유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시설복구 및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유시설 유의사항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최하층 바닥의 무근 콘크리트 설치시, Saw Cutting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 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에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상부 데크층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소방 피난 구조용 직통계단이 3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부는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급배기 루버 설치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 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질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 사용료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로수로 인한 조망 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외부에 볼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휠스, 각종 게시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 주차장 주변부 녹지대는 면적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CG, 분양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간의 연결통로 사용시간은 보안문제 등의 사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용 복도의 사용시간은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협의회(가칭)와 단지 내 주민협의회(가칭)의 협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난, 안전, 소방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라 시공 시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도서 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차구획선 표기 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은 기본 일반주차 구역으로 설치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확장형 주차구역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구획별로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지하 PIT 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 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유효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만족하며 유효 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지하 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엘리베이터 및 계단 위치 단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진입, 출차 각 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급배기용 환과 주차면이 간섭되어 바람에 의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및 층차이 부분 옥상공간은 공용공간으로, 유지, 보수를 위해 세대내 진출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 방식은 입주자회의로 결정에 따릅니다.
-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은 예시이며, 문주설치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 구획 및 대수 산정은 법규 및 각종 심의에 의해 적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의한 과태료 부과/민원(각종 분쟁 등)은 사업당사자와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 시스템(홈네트워크, 주차유도, 원격검침, 커뮤니티 예약 외)은 e편한세상 스마트홈 서비스에 최적화 설계되어있으므로, 사전협의 없는 변경 및 추가행위는 정상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101,102,103,104,108,109,110,112,113동 지하1층 지하2층 동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풍이 설치되어 이로인한, 작동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및 지하3층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구역에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블럭벽체가 구획되어있어, 일부 주차구획구간은 승하차시 공간 미확보로 인한 불편 및 주변 차량주행시 시야확보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 저수조 설치 예정이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펌프실, 환풍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환풍,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RC,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유의사항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고, 각 동의 세대를 고려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등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이나 설계에 명시되지 않은 우오수 맨홀이나 집수정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과 조업용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분양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등의 예정사항은 개발계획의 변경,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자료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에서 직접 확인 바라며, 계약체결 전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커뮤니티센터,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각종 시설물,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는 무관합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분양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 모형(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 단지구획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에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사업주체와는 무관하며, 해당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의 사업으로 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수분양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담보책임의 종료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 내에 보수요청을 하지 않거나, “시공사” 등이 보수요청에 따라 보수를 완료한 경우, 위 연차별 하자보수 책임 및 하자보수보증 책임은 이행된 것으로 보며, “수분양자”는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이에 반하여 “분양자”, “시공사” 등 에게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수분양자”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 명칭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기타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인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인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용검사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 아이소, 세대VR,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일원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주택전시관

■ 분양문의 : 1660-1763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www.elife.co.kr>

※ 본 주택전시관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